투자위험등급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KCGI프리덤적격TDF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KCGI프리덤적격TDF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KCGI프리덤적격TDF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DA517)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5. 12. 5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 11. 11**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개시(2020년 10월 23일)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매사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요약정보> 6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2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12
3. 모집예정금액 12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2
5. 인수에 관한 사항 13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3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14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15
4. 집합투자업자 16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6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6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20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20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55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71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76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80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80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86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91

1. 재무정보 91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99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10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10

1. 집합투자업자의 관한 사항 110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112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12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15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15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18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118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21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122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123

참고 – 펀드용어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모집합투자기구가 최초로 설정한 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 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 개월 이내 수익자총회 없이 다른 투자신탁의 혼합채권형 모투자신탁인 "KCGI 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과 주식형 모투자신탁인 "KCGI 글로벌 diversified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자동변경하는 조치를 취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보수를 정한 펀드인 경우 총보수. 비용 기재 외의 성과보수가 별도로 부과되어 투자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실제 부과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외국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외국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의해 편입된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국주식 또는 외국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나, 투자대상 국가의 통화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통 화의 환율변동 위험이 있으며, 외국 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은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요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별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해외 선진국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폐쇄형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거래량과 유동성 기준이 충분한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투자하지만 폐쇄형 집합투자증권의 개별요인으로 인해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에 비해서 유동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순자산 가치 대비 매매가격의 괴리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해외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 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동 ETF 매매에 대한 과세처리 방법(매수.매도시의 해당 ETF 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매도가격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인해 매매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해당 매매에 적용되는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국내·외 상장리츠 등 부동산 관련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국가나 지역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기타 비용 외에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에 따라 추가적인 보수가 발생하므로,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포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25. 12. 5)

KCGI프리덤적격TDF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DA517)

투자위험등급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 재산은 주로 **국내•외 주식 또는 국내•외 주식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며, 일부를 **국내•외 채권 및 국내•외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으로 인해 **주식의 하락위험, 투자국가 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KCGI 프리덤적격 TDF203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31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금리 환경에서 고객의 노후 자산을 장기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주식이라는 철학하에 수익자의 연령대, 혹은 은퇴까지 잔여기간의 변화에 따라 모펀드 투자 비중 조절을 통해 생애주기형 자산배분 전략을 실행합니다.

<Glide Path에 따른 주식 비중 변화>

- 이 투자신탁의 경우 출시 시점의 주식형 모펀드 비중은 약 65%이며, 이후 목표시점에서 5년 남은 시점에 채권혼합형으로 전환 및 채권형 모펀드의 비중을 65%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이후 다시 5년이 지난 목표시점에는 채권형 모펀드 비중을 70%로 높여 최종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배분을 달성합니다.
- 주식형, 채권형 및 리츠(부동산) 모펀드는 각각 지역별, 섹터별로 다변화 되어 있어 분산투자 효과의 확대 및 단기 변동성의 완화를 도모합니다.

<KCGI프리덤적격TDF2035펀드의 5년 주기 모펀드별 비중 변화>

구분	빈티지	KCGI 글로벌 diversified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KCGI 글로벌 성장기반증권 모투자신탁[주식]	KCGI 글로벌 고배당 증권모 투자신탁[주식-간접형]	KCGI 코리아 증권모 투자신탁[주식]	KCGI 이머징 마켓증권모투자신탁[주식]	KCGI 아시아 테크놀로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형]	KCGI 글로벌 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KCGI 코리아 증권모 투자신탁[채권]	KCGI 글로벌 리츠부동산모 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주식-재간접형	주식형	주식-재간접형	주식형	주식형	주식형	채권-재간접형	채권형	리츠-재간접형
목표시점 (2035)	-	0%	19%	7%	5%	0%	0%	17%	50%	0%
목표-5Y (2030)	적격 TDF2030	6%	20%	7%	3%	3%	3%	15%	41%	1%
목표-10Y (2025)	**적격 TDF2035**	**16%**	**20%**	**11%**	**8%**	**3%**	**3%**	**22%**	**15%**	**1%**
목표-15Y	적격	18%	20%	12%	9%	3%	3%	24%	9%	1%

	TDF2040									
목표-20Y	적격 TDF2045	20%	20%	12%	11%	3%	3%	26%	3%	1%
목표-25Y	적격 TDF2050	21%	20%	13%	11%	3%	3%	24%	3%	1%
목표-30Y	적격 TDF2055	3%	42%	15%	11%	3%	3%	19%	3%	1%
목표-35Y	적격 TDF2060	3%	43%	16%	11%	3%	3%	17%	3%	1%

주1) 투자기간 경과에 따른 모펀드별 투자 비중 변화는 도표와 같으나 시장상황과 운용역의 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펀드 설정 이후에 모펀드가 추가되는 경우, 모펀드별 투자 비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명	투자대상
KCGI글로벌diversified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시행령 제94조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함.
KCGI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펀드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용.
KCGI이머징마켓증권모투자신탁[주식]	신흥시장 국가의 기업, 신흥시장을 주된 사업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주식, 혹은 신흥시장 국가와 산업 관련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투자함.
KCGI글로벌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배당수익을 추구하는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ETF 등 포함)에 투자함.
KCGI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글로벌 채권등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함.
KCGI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국내 채권 60% 이상,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어음 40% 이하, 그 외 기타 유동성자산 및 장·내외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
KCGI글로벌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국내·외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신탁 재산의 50% 이상을 국내·외 리츠에 투자함. 또한 부동산 관련 주식 및 ETF 에도 일부 투자함.
KCGI아시아테크놀로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IT 기업 및 IT 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로써, 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아시아에서 창출하는 수익이 있는 기업들에 장기투자함.
KCGI글로벌성장기반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인프라산업에 관련된 국내·외 주식을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그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외주식에 투자함.

분 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2026.01.01~2030.12.31]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4000%이내	0.6620%	0.3900%	0.8800%	0.6870%	110	183	260	422	894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2000%이내	0.4620%	0.1900%	0.5800%	0.5564%	75	133	193	321	684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투자

	펀드의 보수,비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의 추정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요 집합투자기구들의 보수/수수료는 연 0.0250%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추정치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80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2026.2.27 기준)**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24.12.06 ~ 25.12.05	최근 2 년 23.12.06 ~ 25.12.05	최근 3 년 22.12.06 ~ 25.12.05	최근 5 년 20.12.06 ~ 25.12.05	설정일이후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2020.10.23	13.35	16.50	12.63	8.77	9.26
수익률 변동성(%)	2020.10.23	**8.77**	**8.95**	**8.31**	**8.13**	**8.20**

주1)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 60 재간접형)				운용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강영수	1987	책임 (본부장)	25 개	9,638억원	**18.18%**	-	**18.18 %**	**20.79%**	7 년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3 개	73억원					

주1) 상기인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률 왜곡이 있을 수 있어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주 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채권 또는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며,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국내 및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들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국가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중 국내외의 주식 또는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요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별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해외 선진국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폐쇄형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거래량과 유동성 기준이 충분한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투자하지만 폐쇄형 집합투자증권의 개별요인으로 인해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에 비해서 유동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순자산 가치 대비 매매가격의 괴리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해외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동 ETF매매에 대한 과세처리 방법(매수·매도시의 해당 ETF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매도가격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인해 매매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해당 매매에 적용되는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국내·외 상장리츠 등 부동산 관련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국가나 지역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기타 비용 외에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에 따라 추가적인 보수가 발생하므로,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table>
<tr><td></td><td>
<table>
<tr><td></td><td>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집합투자기구가 최초 설정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이 투자신탁은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다른 투자신탁의 혼합채권형 모투자신탁인 "KCGI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과 주식형 모투자신탁인 "KCGI글로벌diversified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자동변경하는 조치를 취합니다.</td></tr>
<tr><td>환매제한위험</td><td>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td></tr>
</table>
주1) 주요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매입 방법</td><td>·17 시(오후 5 시)이전
: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7 시(오후 5 시)경과 후
: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td><td>환매 방법</td><td>·17 시(오후 5 시)이전 : 제 4 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제 8 영업일 지급
·17 시(오후 5 시)경과 후 : 제 5 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제 9 영업일 지급</td></tr>
<tr><td>환매수수료</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기준가격</td><td colspan="3">
<table>
<tr><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able>
</td></tr>
<tr><td>과세</td><td colspan="3">
<table>
<tr><th>구 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able>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인 종류형의 경우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세제혜택의 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 (TEL. 1588-5533)</td></tr>
<tr><td>모집기간</td><td>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 총액</td><td>10조좌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6. 11. 11</td><td>존속 기간</td><td>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조</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110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3">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2">판매 수수료</td><td>수수료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 rowspan="3">판매 경로</td><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슈퍼(S)</td><td>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종류 S-T 및 S-P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것으로서 다른 종류(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able>
</td></tr>
</table>

	기타	**무권유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고액거래자(최초 납입금액이 20 억원 이상)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등(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디폴트옵션(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인 집합투자증권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cgiam.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cgiam.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KCGI프리덤적격TDF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 DA517)						
(종류)클래스	종류A	종류Ae	종류AG	종류CI	종류CW	종류CF	종류S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수수료선취-온라인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A518	DA519	DA546	DA520	DA521	DA522	DA523
(종류)클래스	종류C-P	종류C-Pe	종류C-P2	종류C-Pe2	종류S-P2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디폴트옵션-퇴직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A524	DA525	DA526	DA527	DA528	E8337	

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31년1월1일부터 "KCGI프리덤적격TDF203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모자형(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개시(2020년 10월 23일)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매사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8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집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KCGI프리덤적격TDF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 DA517)						
(종류)클래스	종류A	종류Ae	종류AG	종류CI	종류CW	종류CF	종류S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수수료선취-온라인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등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A518	DA519	DA546	DA520	DA521	DA522	DA523
(종류)클래스	종류C-P	종류C-Pe	종류C-P2	종류C-Pe2	종류S-P2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디폴트옵션-퇴직연금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A524	DA525	DA526	DA527	DA528	E8337	

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31년1월1일부터 "KCGI프리덤적격TDF203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주요내용
2020. 10. 23	최초설정
2021. 12. 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2022. 2. 10	- 집합투자규약 변경(투자대상인 모집합투자기구 추가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 등) 및 이와 관련 사항 반영 등
2022. 4. 7	- 집합투자규약 변경(투자대상인 모집합투자기구 추가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 등) 및 이와 관련 사항 반영 등
2022. 6. 30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22. 11. 1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22. 12. 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0 조 2 항 4 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2023. 8. 17	- 대주주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사명,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주소지 변경 등
2023. 11. 10	-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기준 변경(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 고려) 및 위험등급 변경(2등급→4등급)
2023. 12. 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운용전문인력 변경에 따른 정정

	- 디폴트옵션 클래스 신설(종류O) 따른 정정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내용 반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고유재산 투자회수에 따른 정정 등
2024. 8. 14	- 집합투자규약 변경(투자대상인 모집합투자기구 추가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 등) 및 관련 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2024. 12. 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사항 반영(종류S관련 정의 개정) - 신탁계약서 변경(모투자신탁의 편입비율을 실질투자에 따른 비율계산으로 명확화함에 따른 조항 변경)에 따른 정정 - 최근 펀드 결산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최근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97.5% VaR모형)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등
2025. 12. 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2항4호에 근거한 최근 결산기의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TDF 5년 주기별 모펀드 투자비중 예시 업데이트 및 Glide Path내 Targetdate기재에 따른 변경 -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변경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등
2026. 4. 1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에 따른 펀드명칭 변경 -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변경에 따른 반영 등
2026. 11. 11	- 최근 펀드결산에 따른 펀드의 변동성 및 위험등급(4등급→3등급) 변경 등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2036년1월1일이후 신탁계약서 제4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것 중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거나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피흡수합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흡수합병일은 이 신탁계약의 해지일로 봅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One IFC 15층 (대표전화 : 1588-5533)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 60 재간접형)				운용경력년수	주요이력사항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강영수	1987	책임 (본부장)	25 개	9,638억원	18.18%	-	18.18%	20.79%	7 년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현재) -케이글로벌자산운용 멀티전략본부장 -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운용 1 팀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3 개	73억원						

주1) 상기인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 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운 용 기 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전문인력
2020. 10. 23 ~ 2022. 6. 28	LEEJOHN JUNGBOK (존리)	박정임	김형석
2022. 6. 29 ~ 2022. 10. 31	박정임	-	김형석
2022. 11. 1 ~ 2023. 12. 14	김홍석	-	김형석
2023. 12. 15 ~ 현재	강영수	-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집합투자기구(재간접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모자형, 종류형

나. 모자형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 집합투자기구**

모 집합투자기구	KCGI글로벌diversified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함.
투자전략	① 집합투자증권(재간접) 운용전략 : 투자자들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주식투자와

	지역분산투자의 관점하에서 미주, 유럽, 아시아, 이머징마켓 등 다양한 국가·지역/섹터별 글로벌 주식을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계획임. ② 주식운용전략 : 국내·외 주식을 선별하여 50% 내외로 투자. 주식 및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음. ✓ 상향식 분석(Bottom-up)에 입각하여 장기적으로 우수한 펀더멘털을 가진 회사의 주식 또는 국가·유형 선택 ✓ 이와 유사한 전략으로 투자하는 국내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주요 투자위험	시장위험 및 주식가격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재간접형투자위험, 투자국가위험 등

모 집합투자기구	**KCGI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펀드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용
투자전략	철저한 펀더멘탈 리서치를 통해 수립한 종목별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와 우수한 경영진을 지닌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고 장기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교지수*대비 초과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주요 투자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주식투자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모 집합투자기구	**KCGI이머징마켓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신흥시장 국가의 기업, 신흥시장을 주된 사업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주식, 혹은 신흥시장 국가와 산업 관련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투자함.
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투자지역, 시장, 세부 산업별 전망,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② 투자운용프로세스 [1단계] : 유니버스 구축 -> [2단계] : 모델 포트폴리오 구축 -> [3단계] : 주식과 ETF 최종 선정 -> [4단계] : 지속적 분석 및 모니터링 ③ 환 노출형 : 투자 대상자산에 별도로 환 헤지를 실행하지 않음. 다만, 특정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단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통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음.
주요 투자위험	시장위험에 따른 위험, 환율변동위험, 투자국가위험,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위험 등

모 집합투자기구	**KCGI글로벌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배당수익을 추구하는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ETF 등 포함)에 투자함.
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들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주식투자와 지역 분산투자의 관점하에서 국내주식을 포함하여 미주, 유럽, 아시아, 신흥국 등 다양한 국가·지역 및 섹터별 글로벌 주식을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② 추가적으로 국내·외주식은 투자프로세스를 통해 선별하여 50% 내외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③ 주식 및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향식 분석(Bottom-up*)에 입각하여 장기적으로 우수한 펀더멘털을 가진 회사의 주식 또는 국가·유형 선택 ➢ 이와 유사한 전략으로 투자하는 국내·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④ 환 노출형 : 투자 대상자산에 별도로 환 헤지를 실행하지 않음. 다만, 특정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단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통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음.
주요 투자위험	시장위험 및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환율변동위험, 투자국가위험,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위험 등

모 집합투자기구	**KCGI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투자대상	글로벌 채권등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함.
투자전략	① 미국, 유럽, 신흥시장 등 전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정부, 지방정부, 기업 등이 발행한 채권들을 편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에 주로 투자 ② 투자지역, 시장, 세부 산업별 전망,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전략을 실행할 계획 ③ 환헤지 여부 : 투자 대상자산에 원칙적으로 환 헤지를 실행하지 않음. 다만, 특정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단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통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음.
주요 투자위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환율변동위험, 투자국가위험,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위험 등

모 집합투자기구	**KCGI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주요투자대상	국내 채권 60% 이상,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어음 40% 이하 그 외 기타 유동성자산 및 장·내외 파생상품 등
투자전략	**① 듀레이션 조정전략 (펀드 잔존만기 조정)**: 금리 예측과 추세분석 결과에 따라 금리국면별(하락기, 횡보기, 상승기) 추세에 순응하는 탄력적인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 조절로 위험관리 ② **상대가치 전략** : 신용등급과 만기 비중을 고려한 상대매매 전략에 초점 (고평가된 종목 매도, 저평가된 종목 매수) i. 스프레드 전략 - 수익률곡선조정 투자전략 : 만기교체전략, 바벨(단·장기영역중심)-블릿(중기영역중심)교체전략 ii. 크레딧 전략 - 신용등급별조정 투자전략 : 저평가된 종목발굴 및 영역별 투자대상 교체
주요 투자위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신용위험, 거래상대방 위험 등

모 집합투자기구	**KCGI글로벌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투자대상	국내·외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신탁 재산의 50% 이상을 국내·외 리츠에 투자합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주식 및 ETF 에도 일부 투자합니다.
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Bottom-up 분석과 Top-down 스크리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전 세계의 리츠 중 안정적인 배당수익과 장기적인 자본차익이 기대되는 종목을 선별하여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고수익을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②투자운용프로세스 [1단계] 글로벌 전체 800여개 리츠 중 스크리닝을 통해 200여개의 투자 가능 유니버스 선정 [2단계]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 방법을 통해 투자대상 후보 종목군 선별 [3단계] 펀더먼탈 리서치 및 섹터별 자산배분 [4단계] 포트폴리오 구축 및 필요 시 리밸런싱 ③ 환 노출형 : 투자 대상자산에 별도로 환 헤지를 실행하지 않음.
주요 투자위험	시장위험에 따른 위험, 환율변동위험, 투자국가위험,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위험 등

모 집합투자기구	**KCGI아시아테크놀로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IT 기업 및 IT 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로써, 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아시아에서 창출하는 수익이 있는 기업들에 장기투자합니다.
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투자지역, 시장, 세부 산업별 전망,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② 투자운용프로세스 [1단계] : 유니버스 구축 -> [2단계] : 시장지표를 활용한 1차 압축 -> [3단계] : 재무지표를 활용한 2차 압축 -> [4단계] : 펀더멘탈 분석 및 최종 포트폴리오 구축 ③ 환 노출형 : 투자 대상자산에 별도로 환 헤지를 실행하지 않음. 다만, 특정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단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통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시장위험에 따른 위험, 환율변동위험, 투자국가위험, 집중투자위험에 따른 위험 등

모 집합투자기구	**KCGI글로벌성장기반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인프라산업에 관련된 국내·외주식을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그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외주식에 투자함.
투자전략	① 운용전략 - 국내·외(국내, 미주, 유럽, 아시아, 이머징마켓 등) 다양한 국가·지역의 인프라산업 관련 및 인프라 확충에 따른 수혜 종목 등에 투자할 계획 -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 지역별, 국가별 인프라 산업전망, 인프라 세부 섹터의 분석을 통하여 해외, 국내 주식 등에 투자 - 투자지역, 시장, 세부 산업별 전망,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전략을 실행할 계획

	② 환헤지전략 - 환헤지 여부 : 투자 대상자산에 별도로 환 헤지를 실행하지 않음.
주요 투자위험	시장위험 및 주식가격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집중투자위험, 투자국가위험 등

다.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종류 S-T 및 S-P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것으로서 다른 종류(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고액거래자(최초 납입금액이 20 억원 이상)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등(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디폴트옵션(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인 집합투자증권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2031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자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모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	90% 이상	가. KCGI글로벌diversified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나. KCGI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다. KCGI이머징마켓증권모투자신탁[주식] 라. KCGI글로벌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마. KCGI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바. KCGI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사. KCGI글로벌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아. KCGI아시아테크놀로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자. KCGI글로벌성장기반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별 실질투자비율은 각각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당자산 투자비율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1. 금융투자업규정 제5-23조의2 1호부터 8호까지의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을 포함)의 비중을 투자목표시점 이전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로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31년1월1일 이후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1-2. 투자적격등급(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 이외의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에 대한 실질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하고,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한다. 1-3.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 및 채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을 포함)의 투자한도는 주식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주식투자액의 80% 이내, 채권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채권투자액의 80% 이내로 한다.		
②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10% 이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및 모투자신탁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재산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투자신탁재산의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내지 ②의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내지 ②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자세한 투자대상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KCGI글로벌diversified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다만,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과 주식 등에 60%이상 투자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을 포함한다)(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②	주식	5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주식"이라 한다)
③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④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이하 같다)
⑤	어음	4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⑥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⑦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⑧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주1)	증권총액의 50%이하
⑨	증권의 차입주2)	①~③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⑪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이하 같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투자신탁재산의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③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③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④~⑨ 내지 신탁계약서 제19조제2호내지 제3호, 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③및 ⑤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4) 신탁계약서 제19조제2호 가목·나목, 제3호본문, 제4호 내지 제5호와 법 제229조제1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KCGI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이하 "주식"이라 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	4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⑤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⑥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⑦	집합투자증권	40%이하 (단, ETF에의 투자는 30%까지 가능)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법 제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⑧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⑨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주1)]	증권총액의 50%이하	
⑩	증권의 차입[주2)]	①~③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⑪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⑫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2. 금융기관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 투자신탁재산의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③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③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④~⑩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② 및 ④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KCGI이머징마켓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 요 내 용
①	국내·외국주식	60% 이상 단, 외국주식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 투자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DR: Depository Receipt)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국내·외주식"이라 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어음 등	4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④	집합투자증권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을 포함한다)(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⑤	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자산총액의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단, 투자하는 자산관련 통화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 한한다. 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⑥	환매조건부매도	4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 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⑦	증권의 대여주1)	50% 이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⑧	증권의 차입주2)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이 자산총액의 20%이하	
⑨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 투자신탁재산의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1) 다음 각호의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투자대상 중 ①내지 ④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내지 ④의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⑥부터 ⑨까지 및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부터 제3호, 제5호내지 제6호,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②및 ③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신탁계약서 제17조 제2호본문, 제4호부터 제6호 및 제8호 가목 및 나목과 법 제229조제1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KCGI글로벌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다만,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과 주식 등에 60%이상 투자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을 포함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②	주식	5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주식"이라 한다)
③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④	어음	4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⑤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단, 투자하는 자산관련 통화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 한한다. 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⑥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⑦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주1)]	증권총액의 50%이하	
⑧	증권의 차입[주2)]	①~④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⑨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⑩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이하 같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투자신탁재산의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④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④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⑥~⑧ 내지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부터 제4호,제6호내지 제7호까지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③및 ④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4)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 가목·나목, 제3호본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법 제229조제1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KCGI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 60%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을 포함한다)(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하며,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어음	4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④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단, 투자하는 자산관련 통화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 한한다. 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⑤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⑥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주1)	증권총액의 50%이하	
⑦	증권의 차입주2)	①~③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⑧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⑨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이하 같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투자신탁재산의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③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③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⑤~⑦내지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부터 제3호, 제5호내지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②및 ③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4)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가목 및 나목, 제3호본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법 제229조제1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KCGI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채권	60% 이상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여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②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③	어음	4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④	장내·외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이하 "장내·외파생상품"이라 한다)
⑤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가 되도록 하며, 매매에 따르는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⑥	집합투자증권	40%이하 (단, ETF에의 투자는 30%까지 가능)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하며,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이하 "ETF"라 한다)
⑦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환매조건부매도"라 한다)
⑧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주1)	증권총액의 50%이하	-
⑨	증권의 차입주2)	20% 이하	①내지 ③에 의한 증권의 차입을 말한다.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한다.
⑪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되는 자금으로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을 말한다.

* 투자신탁재산의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③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③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④~⑨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①및 ③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1) 집합투자기구의 추가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수수료 수취의 목적으로 보유 증권을 대여할 수 있음.

주2) 집합투자기구의 추가적인 수익 증대와 효율적 운용을 위해 차익 거래,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담보 제공, 환매 대응, 시장위험 헤지 등의 목적으로 증권을 차입할 수 있음.

KCGI글로벌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집합투자증권	60%이상 단, 상장된 공모형 국내·외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 50%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상장된 공모형에 한하며,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②	주식	40%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③	채권	40%이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④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내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 및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장외파생상품을 포함)으로서 주식, 채권, 통화나 주식, 채권, 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⑤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주1)]	증권총액의 50%이하	
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50%이하	환매조건부 매도란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⑦	증권의 차입[주2]	20%이하	상기의 지분증권,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등의 차입
⑧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에 한함	
⑨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이하 같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투자신탁재산의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③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③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⑤~⑦ 내지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부터 제4호, 제6호내지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까지 부도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3)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상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4)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가목 및 나목, 제3호본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법 제229조제2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KCGI아시아테크놀로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 요 내 용
①	국내·외국주식	60% 이상 단, 외국주식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 투자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DR: Depository Receipt)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국내·외주식"이라 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

			야 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어음 등	4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④	집합투자증권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을 포함한다)(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⑤	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자산총액의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단, 투자하는 자산관련 통화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 한한다. 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⑥	환매조건부매도	4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 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⑦	증권의 대여주1)	50% 이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⑧	증권 차입주2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이 자산총액의 20%이하	
⑨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 투자신탁재산의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1) 다음 각호의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투자대상 중 ①내지 ④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내지 ④의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⑥부터 ⑨까지 및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부터 제3호, 제5호내지 제6호,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②및 ③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신탁계약서 제17조 제2호본문, 제4호부터 제6호 및 제8호 가목 및 나목과 법 제229조제1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세한 투자대상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KCGI글로벌성장기반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 요 내 용
①	국내·외국주식	60% 이상 단, 외국주식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국내·외주식"이라 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④	어음 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⑤	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자산총액의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하며 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⑥	집합투자증권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행된 증권으로서 집합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하며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⑦	환매조건부매도	4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 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⑧	증권의 대여주1)	50% 이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⑨	증권차입주2)	①~④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 투자신탁재산의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함을 의미한다.

다음 각호의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투자대상 중 ①내지 ④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내지 ④의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⑤부터 ⑨까지 및 신탁계약서 제19조제2호부터 제6호, 제8호제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②및 ④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신탁계약서 제19조제2호 본문, 제4호부터 제6호, 제18조제5호, 법 제229조제1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투자신탁의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KCGI글로벌diversified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구분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동일종목 투자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	최초설정

	다. 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나.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신탁계약서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회사 기초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법 제84조제4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주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CGI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동일종목투자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나.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회사 기초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법 제84조제4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주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CGI이머징마켓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내용	적용제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나.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신탁계약서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간 적용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취득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주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CGI글로벌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구분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동일종목투자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

	예탁증권을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나.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신탁계약서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회사 기초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법 제84조 제4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주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CGI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구분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동일종목투자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나.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신탁계약서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	최초설정일로부터

	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개월간
동일회사 기초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법 제84조 제4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주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CGI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구분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한국은행법」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회사 기초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장외파생상품 매매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동일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매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법 제84조제4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CGI글로벌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구분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바.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 국채증권,「한국은행법」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나.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매매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회사 기초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법 제84조제4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주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CGI아시아테크놀로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내용	적용제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

	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나.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신탁계약서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취득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주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CGI글로벌성장기반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동일종목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나.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신탁계약서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의2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취득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주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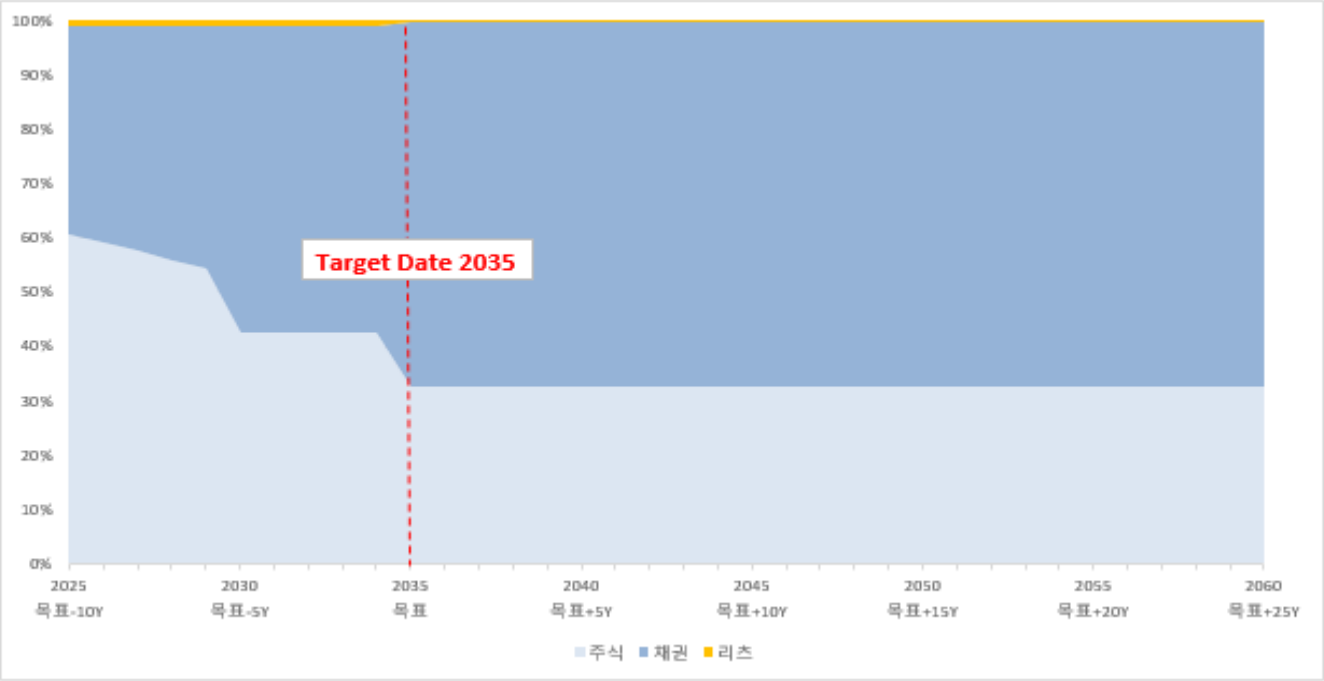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과 리츠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전략적 자산배분을 실행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장기 안정적인 자산배분투자를 위해 이 투자신탁은 특정 목표시점(이 투자신탁의 경우

2035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을 축소하고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위주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실행합니다.

(2) 주요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저금리 환경에서 고객의 노후 자산을 장기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주식이라는 철학 하에 수익자의 연령대, 혹은 은퇴까지 잔여기간의 변화에 따라 모펀드 투자 비중 조절을 통해 생애주기형 자산배분 전략을 실행합니다.
- 목표 시점으로부터 5년 남은 시점을 기준으로 안정성을 기한 채권형 모펀드의 비중을 크게 확대시켜 수익자의 노후 자산 관리 목적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Glide Path에 따른 주식 비중 변화>



- 이 투자신탁의 경우 출시 시점의 주식형 모펀드 비중은 약 65%이며, 이후 목표시점에서 5년 남은 시점에 채권혼합형으로 전환 및 채권형 모펀드의 비중을 65%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이후 다시 5년이 지난 목표시점에는 채권형 모펀드 비중을 70%로 높여 최종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배분을 달성합니다.
- 주식형, 채권형 및 리츠(부동산) 모펀드는 각각 지역별, 섹터별로 다변화 되어 있어 분산투자 효과의 확대 및 단기 변동성의 완화를 도모합니다.

<KCGI프리덤적격TDF2035펀드의 5년 주기 모펀드별 비중 변화>

구분	빈티지	KCGI글로벌 diversified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KCGI글로벌성장기반증권모투자신탁[주식]	KCGI글로벌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간접형]	KCGI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KCGI이머징마켓증권모투자신탁[주식]	KCGI아시아테크놀로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형]	KCGI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KCGI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KCGI글로벌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주식-재간접형	주식형	주식-재간접형	주식형	주식형	주식형	채권-재간접형	채권형	리츠-재간접형
목표 시점 (2035)	-	0%	19%	7%	5%	0%	0%	17%	50%	0%

목표-5Y (2030)	적격 TDF2030	6%	20%	7%	3%	3%	3%	15%	41%	1%
목표-10Y (2025)	**적격 TDF2035**	**16%**	**20%**	**11%**	**8%**	**3%**	**3%**	**22%**	**15%**	**1%**
목표-15Y	적격 TDF2040	18%	20%	12%	9%	3%	3%	24%	9%	1%
목표-20Y	적격 TDF2045	20%	20%	12%	11%	3%	3%	26%	3%	1%
목표-25Y	적격 TDF2050	21%	20%	13%	11%	3%	3%	24%	3%	1%
목표-30Y	적격 TDF2055	3%	42%	15%	11%	3%	3%	19%	3%	1%
목표-35Y	적격 TDF2060	3%	43%	16%	11%	3%	3%	17%	3%	1%

[매5년 단위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글라인드 패스상의 목표비중]

구분	위험자산 (주식, 리츠 등)	안전자산 (채권 등)
목표 시점(2035)	31	69
목표-5Y(2030)	43	57
목표-10Y(2025)	**62**	**38**

주1) 투자기간 경과에 따른 모펀드별 투자 비중 변화는 도표와 같으나 시장상황과 운용역의 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펀드 설정 이후에 모펀드가 추가되는 경우, 모펀드별 투자 비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은 전체 자산총액의 10% 이하를 유지합니다. 다만 대량환매 혹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 해당 이슈가 해소되기까지 일시적으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환노출형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 대상자산에 원칙적으로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2의 적격 집합투자증권 인정기준에 부합합니다.

-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모집합투자기구 : KCGI글로벌diversified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 개요

KCGI 글로벌 diversified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재간접형 투자신탁입니다.

2) 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들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주식투자와 지역분산투자의 관점하에서 국내·외 주식을 포함하여 미주, 유럽, 아시아, 이머징마켓 등 다양한 국가·지역 및 섹터별 글로벌 주식을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국내·외 주식은 투자프로세스를 통해 선별하여 50% 내외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집합투자증권(재간접) 운용전략>

① 이 투자신탁의 운용팀은 CIO(최고투자의사결정자)를 중심으로 하여 글로벌 및 아시아주식 투자 전문 펀드매니저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상향식 분석(Bottom-Up*, 주식 본질가치의 매력 기준)을 통하여 국내·외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대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투자지역 및 시장간

상관관계 정도 및 저평가 매력도,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비중을 결정합니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장기적인 주식운용철학의 유지와 글로벌 분산투자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의 예시(상위 5 종목)

펀드명	규모(백만$)	설정일	투자전략
Vanguard S&P 500 ETF	824,817	2010-09-09	뱅가드 S&P 500 ETF는 미국에서 설립된 상장지수펀드입니다. 이 ETF는 S&P 500 지수의 성과를 추적합니다. 이 ETF는 주로 미국 대형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수를 구성하는 500개 주식에 모두 투자합니다. ETF는 시가총액 방법론을 사용하여 보유 종목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기별로 리밸런싱합니다.
SPDR S&P 500 ETF Trust	721,162	1993-01-22	SPDR S&P 500 ETF Trust는 미국에 설립된 상장지수펀드(ETF)입니다. 이 ETF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며, S&P 500 지수에 포함된 500개의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의 대형주를 포함하며, 유닛 투자 신탁(Unit Investment Trust)으로 구조화되어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보유 종목들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편성됩니다.
Welltower Inc	140,224	상장리츠	Welltower Inc.는 부동산 투자 신탁(REIT)입니다. 이 회사는 시니어 주거 운영업체, 회복기 치료 제공업체, 그리고 헬스케어 시스템에 투자하여 더 나은 치료를 위한 헬스케어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Welltower는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Vanguard FTSE Europe ETF	28,585	2005-03-10	뱅가드 FTSE 유럽 ETF는 미국에 설립된 상장지수펀드입니다. 이 ETF는 유럽 주요 시장에 위치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투자 수익률을 측정하는 FTSE 선진 유럽 올캡 지수의 성과를 추적합니다. 이 ETF는 시가총액 방법론을 사용하여 보유 종목에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iShares MSCI Japan ETF	15,857	1996-03-18	iShares MSCI Japan ETF는 미국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입니다. 이 ETF의 목표는 MSCI 일본 지수로 측정한 일본 시장의 성과에 상응하는 투자 결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ETF는 시가총액 가중 "포트폴리오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섹터의 대표적인 지수 종목 샘플에 투자합니다.

주1) 상기의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펀드에 대한 예시(2025.12.05기준)이므로,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운용 중 시장 상황 및 펀드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식운용전략>

① 철저한 펀더멘탈 리서치와 기업탐방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구조, 우수한 경영진을 지닌 저평가 기업을 발굴하여 장기투자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결정하고 있는 특징적 요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적인(3년이상) 관점에서 우수한 경영진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지닌 기업
✓ 업종 내 시장점유율, 성장성, 업종 내 경쟁력, 브랜드를 고려하여 기업 선정
✓ 다른 기업의 진입이 불가능한 진입장벽(기술, 규모, 가격 등)을 보유한 기업
✓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할 능력을 갖춘 기업
✓ 미래에 일등기업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기업
✓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증가면서 높은 ROE(Return on Equity)*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기업
✓ 주가가 성장성 및 경쟁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저평가 되어있는 기업
✓ 이해할 수 있고 좋은 사업구조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

② 포트폴리오 선정프로세스

✓ 당사가 기 선정한 종목군 내에서 1차적인 스크리닝을 실행

✓ 장기투자를 위해 투자 매력도와 저평가 여부, 대표성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장기투자할 수 있는 우량주식을 선별, 보다 압축된 주식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함.



※상기의 프로세스 및 운용전략은 실제 운용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Bottom up approach 방식(상향식 접근방식) : 기업분석→산업분석→거시경제순으로 분석하는 방식

* ROE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 기업이 자기자본(주주지분)을 활용해 1년간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경영효율성을 표시

모집합투자기구 : KCGI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개요

KCGI 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종목들을 이 투자신탁의 자산으로 편입합니다.

2) 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전략

철저한 펀더멘탈 리서치를 통해 수립한 종목별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운용할 계획

①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와 우수한 경영진을 지닌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고 장기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교지수*대비 초과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② 포트폴리오 구성

✓ 장기적인(3년이상) 관점에서 우수한 경영진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지닌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 업종 내 시장점유율, 성장성, 업종 내 경쟁력, 브랜드를 고려하여 기업 선정

✓ 다른 기업의 진입이 불가능한 진입장벽(기술, 규모, 가격 등)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

✓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할 능력을 갖춘 기업에 투자

✓ 미래에 일등기업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

✓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증가면서 높은 ROE(Return on Equity)*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기업에 투자

✓ 주가가 성장성 및 경쟁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저평가 되어있는 기업에 투자

✓ 이해할 수 있고 좋은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

✓ 소외된 저평가 기업에 대한 발굴 및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제고

✓ 건전한 지배구조와 우수한 경영진을 갖춘 기업에 투자

③ 투자운용 프로세스

✓ 커버리지 기업 및 산업에 대해 심도 깊은 리서치를 수행하며 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경쟁적 우위, 그리고 향후 사업의 방향성 및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 수익성 등을 평가하여 밸류에이션과 비교 분석 합니다.

✓ 운용프로세스의 주요사항은 계량적 스크리닝, 회계분석 및 펀더멘탈 분석입니다.

i. 계량적 스크리닝 : 높은 재무적 성과 (높은 ROE*, ROA*, ROIC*, 잉여현금흐름*)와 매력적인 가격수준 (낮은 price/book, price/cash flow, price/earnings, price/sales)*등의 종목을 선별

ii. 회계 분석 : 회사의 재무정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및 기타 관련 주석)의 분석를 통해 회계적 결정 및 방침이 밸류에이션과 재무적 지표에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

iii. 펀더멘탈 분석 : 투자운용 프로세스 중 중요한 요소인 펀더멘탈 분석이며, 이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여부, 이슈 분석 및 가격의 재평가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이 단계에서는 회사의 아래 사항들이 포함하여 분석.

(ㄱ) 경영진의 자질과 능력

(ㄴ)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 여부과 강점과 우수성 평가

(ㄷ) 경쟁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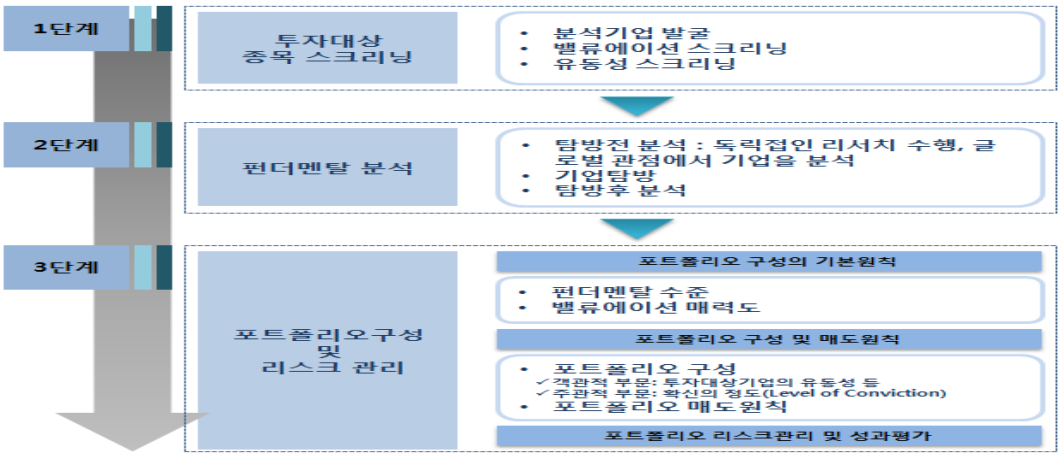
(ㄹ) 매출 및 수익성 추이

(ㅁ) 브랜드 경쟁력

(ㅂ) 거시적 환경

(ㅅ)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

④ 포트폴리오 선정프로세스



* Bottom up approach 방식(상향식 접근방식) : 기업분석→산업분석→거시경제순으로 분석하는 방식

* ROE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 기업이 자기자본(주주지분)을 활용해 1년간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 경영효율성을 표시

* ROA (Return On Assets) 총자산순이익률

: 기업의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올렸는지를 가늠하는 지표

* ROIC (Return On Invested Capital) 투하자본순이익률

: 기업이 실제 영업활동에 투입한 자산으로 영업이익을 얼마나 거뒀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며, 기업의 수익 창출 역량을 측정하는 데 활용

* 잉여현금흐름

: 기업이 사업활동에서 벌어들인 현금에서 각종 비용과 세금 등을 빼고 남은 잔여 현금흐름으로 기업에 현금이 얼마나 순유입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 price/book(price/book Value Ratio) :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

기업의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 1주당 몇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 price/cash flow Ratio : 주가를 1주당 현금흐름으로 나눈 값

주가가 주당 현금흐름의 몇 배에 해당하는가의 배수를 나타낸 투자지표

* price/earnings Ratio : 주가를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

기업이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대비 수익창출 능력을 종합한 대표 지표

* price/sales ratio : 주가를 1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
기업의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이용되는 성장성 투자지표

모집합투자기구 : KCGI이머징마켓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개요

- 이 투자신탁은 신흥시장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합니다.

2) 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에서 말하는 신흥시장이란, 신흥시장 국가의 기업, 상장된 지역/시장과 상관없이 신흥시장을 주된 사업 대상으로 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신흥시장 국가의 기업, 신흥시장을 주된 사업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주식, 혹은 신흥시장 국가와 산업 관련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② 투자지역, 시장, 세부 산업별 전망,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① 환 노출형 : 이 투자신탁은 투자 대상자산에 원칙적으로 환 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단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통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인 주식 등에 투자함에 따라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일부 노출됩니다. 투자대상 국가의 통화에 대해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통화의 환율변동 위험이 있으며, 외국 주식 등 외화표시자산은 환율 하락시(상승시) 환차손(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헤지의 장단점

· 장점 : 환헤지할 경우 환율이 하락(원화평가절상)시 발생하는 환차손(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헤지포지션에서 발생된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으므로 환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점 : 환헤지할 경우 환율이 상승(원화평가절하)시 발생하는 환차익(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헤지포지션에서 발생된 손실에 충당해야 하므로 환차익을 얻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환위험 헤지시 거리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④ 투자운용프로세스

[1단계] : 유니버스 구축

➢ 신흥시장 지수(Emerging Markets) 편입 주식 2,700여개 및 신흥시장 ETF 500여개 종목으로 유니버스 구성

[2단계] : 양적 스크리닝

➢ 시가총액, 일평균 거래대금, 실적 추이 및 밸류에이션 등 양적 지표를 통해 모델 포트폴리오 구축

[3단계] : 최종 선정

➢ 상향식(Bottom-Up*) 분석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고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과 ETF 등으로 최종 포트폴리오 구성

[4단계] : 지속적 분석 및 모니터

➢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각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분석을 통하여 투자 종목의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 Bottom-Up 방식(상향식 분석 방식) : 기업분석→산업분석→거시경제순으로 분석하는 방식

***포트폴리오 운용프로세스 전체 흐름**

퀀트 스크리닝과 상향식 분석을 접목한 포트폴리오 구축



모집합투자기구 : KCGI글로벌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 개요

-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들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주식투자와 지역 분산투자의 관점하에서 국내주식을 포함하여 미주, 유럽, 아시아, 신흥국 등 다양한 국가·지역 및 섹터별 글로벌 주식을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과 주식에 60%이상 투자합니다.

2) 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전략

<기본 운용 방침>

① 이 투자신탁은 고배당이거나 배당지급 확대가 예상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② 추가적으로 국내·외주식은 투자프로세스를 통해 선별하여 투자하고자 합니다.

③ 주식 및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향식 분석(Bottom-up*)에 입각하여 장기적으로 우수한 펀더멘털을 가진 회사의 주식 또는 국가·유형 선택

✓ 이와 유사한 전략으로 투자하는 국내·외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④ 환 노출형 : 이 투자신탁은 투자 대상자산에 별도로 환 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단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통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을 편입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에 따라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일부 노출됩니다. 투자대상 국가의 통화에 대해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통화의 환율변동 위험이 있으며, 외국 주식 등 외화표시자산은 환율 하락시(상승시) 환차손(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헤지의 장단점

· 장점 : 환헤지할 경우 환율이 하락(원화평가절상)시 발생하는 환차손(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헤지 포지션에서 발생된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으므로 환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점 : 환헤지할 경우 환율이 상승(원화평가절하)시 발생하는 환차익(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헤지 포지션에서 발생된 손실에 충당해야 하므로 환차익을 얻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환위험 헤지시 거리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운용전략>

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팀은 글로벌 및 아시아주식 투자 전문 펀드매니저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상향식 분석(Bottom-Up*)을 통하여 국내·외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대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투자지역 및 시장간 상관관계 정도 및 저평가 매력도,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투자비중을 결정합니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장기적인 주식운용철학 하에서 글로벌 분산투자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포트폴리오는 배당수익률이 높은, 혹은 향후 배당금 확대가 예상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리츠,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전 세계 시장에서 분산투자할 계획입니다.

③ 포트폴리오 선정 프로세스:

- ✓ 고배당 혹은 배당지급 확대가 기대되는 ETF(ETFDB.com**의 분류기준 참조)를 중심으로 투자 유니버스 구성
- ✓ 일평균 거래대금, 운용보수, 예상 배당수익률 등 양적 지표를 적용하여 스크리닝
- ✓ Bottom-up 방식으로 개별 ETF 의 지역 비중, 산업 비중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투자 종목 선정
- ✓ 펀더멘탈 분석에 의거해 지속적인 배당 지금이 기대되는 국내/외의 지분증권, 수익증권(리츠 포함) 종목 선정



※ 상기의 프로세스 및 운용전략은 실제 운용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Bottom-Up 방식(상향식 분석 방식) : 기업분석→산업분석→거시경제순으로 분석하는 방식

** ETFDB.com: 2009년 설립된 ETF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의 예시(상위 5 종목)

펀드명	규모(백만$)	설정일	투자전략
SPDR S&P 500 ETF Trust	721,162	1993-01-22	SPDR S&P 500 ETF Trust는 미국에 설립된 상장지수펀드(ETF)입니다. 이 ETF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며, S&P 500 지수에 포함된 500개의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의 대형주를 포함하며, 유닛 투자 신탁(Unit Investment Trust)으로 구조화되어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보유 종목들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편성됩니다.
Welltower Inc	140,224	상장리츠	Welltower Inc.는 부동산 투자 신탁(REIT)입니다. 이 회사는 시니어 주거 운영업체, 회복기 치료 제공업체, 그리고 헬스케어 시스템에 투자하여 더 나은 치료를 위한 헬스케어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Welltower는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 ETF	101,984	2006-04-27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 ETF는 미국에 설립된 상장지수펀드(ETF)입니다. 이 ETF는 S&P US Dividend Growers Index를 추종하며, 중형 및 대형 미국 주식에 투자합니다. 10년 연속 배당을 증가시킨 기록이 있는 미국 보통주에 집중 투자하며, REITs는 제외됩니다. 보유 종목들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통해 편성됩니다.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71,535	2011-10-20	슈왑 미국 배당 주식 ETF는 미국에 설립된 상장지수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다우존스 배당 100 지수의 성과를 추적합니다. 지수의 성과를 추적합니다.
iShares Core Dividend Growth ETF	35,699	2014-06-12	iShares Core Dividend Growth ETF는 미국에 설립된 상장지수펀드(ETF)입니다. 이 ETF는 꾸준히 배당을 성장시켜 온 미국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의 투자 성과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ETF는 Morningstar US Dividend Growth Index를 추종합니다.

주1) 상기의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펀드에 대한 예시(2025.12.05기준)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운용 중 시장 상황 및 펀드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합투자기구 : KCGI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 개요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2) 주요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미국, 유럽, 신흥시장 등 전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정부, 지방정부, 기업 등이 발행한 채권들을 편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투자지역, 시장, 세부 산업별 전망,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 환헤지 여부 : 이 투자신탁은 투자 대상자산에 원칙적으로 환 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단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통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 투자운용프로세스

[1 단계] : 유니버스 구축

➢ 전세계 채권형 ETF 1,300여개로 투자 유니버스 구축

[2 단계] : 모델 포트폴리오 구축

➢ 일평균 거래대금, 배당수익률, ETF 운용보수 등 양적 지표에 대한 스크리닝을 통해 투자 대상 종목 압축

[3 단계] : 최종 포트폴리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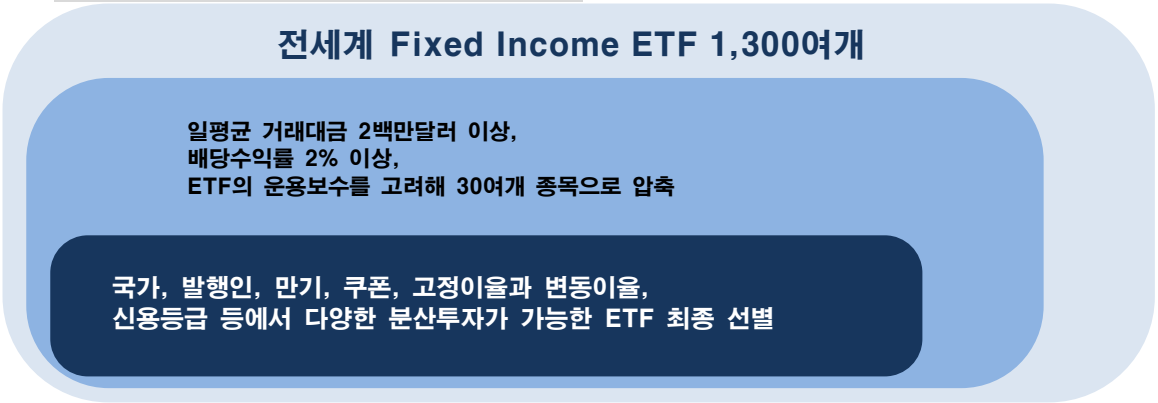
➢ 채권형 ETF의 국가 구성, 신용등급 구성, 고정 혹은 변동이율 구성 등을 감안해 효율적인 분산투자전략을 통해 최종 포트폴리오 선정

[4 단계] : 지속적 분석 및 모니터링

➢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각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분석을 통하여 투자 종목의 모니터링은 및 사후관리

***포트폴리오 운용프로세스 전체 흐름**

- **전세계 채권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



※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의 예시(상위 5 종목)

펀드명	규모(백만$)	설정일	투자전략
Vanguard Total Bond Market ETF	144,373	2007-04-10	뱅가드 토탈 채권 시장 ETF는 미국에 설립된 상장지수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미국의 다양한 상장, 투자 등급, 과세 대상, 채권 증권을 측정하는 블룸버그 종합 채권 지수의 성과를 추적합니다.
Vanguard Total International Bond ETF	73,940	2013-06-04	뱅가드 토털 인터내셔널 본드 ETF는 미국에서 설립된 상장지수펀드(ETF)입니다. 이 펀드는 블룸버그 글로벌 애그리게이트 ex-USD 플로트 조정 RIC 제한 지수(USD 헤지)의 가격 및 수익률 성과에 대체로 부합하는 투자 결과를 추구합니다.
Vanguard Intermediate-Term Corporate Bond ETF	58,722	2009-11-23	뱅가드 중기 회사채 ETF는 미국에서 설립된 상장지수펀드(ETF)입니다. 이 펀드는 블룸버그 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	48,811	2002-07-26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20년 이상 만기의 미국 국채에 주로 투자합니다.
iShares 7-10 Year Treasury Bond ETF	44,521	2002-07-26	iShares 7-10년 만기 미국 국채 ETF는 미국에서 설립된 상장지수펀드(ETF)입니다. 이 ETF는 만기가 7년에서 10년 사이인 미국 국채로 구성된 지수의 투자 결과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1) 상기의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펀드에 대한 예시(2025.12.05기준),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운용 중 시장 상황 및 펀드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합투자기구 : KCGI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1) 개요

KCGI 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형 투자신탁입니다.

2)운용대상

우량회사채	스프레드 축소가 가능한 우량 회사채를 선별하여 투자
국공채, 은행채, 특수채 및 유동성자산	국공채, 특수채, 금융채 및 유동성 자산 편입
파생상품	국채선물, 스왑 등 위험회피전략, 차익거래전략용으로 활용

3) 주요투자전략

① 기본 포트폴리오 구성

- 채권수익률곡선(Yield Curve)분석을 통해 기간경과에 따른 만기축소시 금리하락효과가 큰 투자영역 비중 확대
- 절대금리수준과 저평가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자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별 투자영역비중 결정

② 운용전략

- **듀레이션 조정전략 (펀드 잔존만기 조정)**

  금리 예측과 추세분석 결과에 따라 금리국면별(하락기, 횡보기, 상승기) 추세에 순응하는 탄력적인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 조절로 위험관리

- **상대가치 전략 : 신용등급과 만기 비중을 고려한 상대매매 전략에 초점 (고평가된 종목 매도, 저평가된 종목 매수)**

i. 스프레드 전략

- 수익률곡선조정 투자전략 : 만기교체전략, 바벨(단·장기영역중심)-블릿(중기영역중심)교체전략
- 현물과 선물, 스왑 저평가를 이용한 금리차이(Spread) 투자전략

ii. 크레딧 전략

- 신용등급별조정 투자전략 : 저평가된 종목발굴 및 영역별 투자대상 교체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 KCGI 글로벌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1) 개요

이 투자신탁은 국내 공모 리츠를 포함하여 미국, 캐나다, 싱가폴 등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리츠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리츠는 GICS* Sector 분류 기준상 REITs로 분류되는 종목, 혹은 국내 기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를 포함을 의미합니다.

* GICS: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의 약칭으로 MSCI와 S&P에서 개발한 산업 분류 체계입니다. 현존하는 주요 상장 회사들을 11개의 부문(Sector)과 69개의 산업(Industry)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리츠는 부동산 부문의 하위 산업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전략

▪ 전통적 리츠인 주거용, 오피스, 리테일 외에도 산업용리츠, 헬스케어리츠, 데이터센터리츠 등 다양한 서브섹터 리츠가 존재합니다. 이에 당사는 글로벌 운용담당 팀원과 협업을 통해 리서치 공유 및 섹터 리츠의 전방산업에 대한 펀더멘탈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구조적인 임차 수요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하고자 합니다.

리츠(REITs)의 하위(Sub-Sector)분류

분류	특징	핵심지표
주거용	공동/단독 주거용 시설 임대 임차기간이 1~2년으로 짧아 임차인 리스크가 높은 편	주택보급률, 기준금리, 대출정책
리테일	대형 쇼핑몰, 쇼핑센터 등 소매판매 시설 임대 임차인은 소비재 및 브랜드 업체로 구성	소매판매, e커머스 침투율
오피스	사무용(의료, 정부기관 포함) 오피스 빌딩 임대 임대료 상승률과 임차율이 경기 민감도 높은 편	실업률, 공실율
호텔	호텔, 일반 숙박시설, 리조트 임대 여행 수요에 노출되며 경기 의존도 가장 높음	인당 국민총소득(GNI)
산업용	산업용 물류창고, 물류센터, 냉동창고 등 임대 e커머스 확대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따라 수요 성장	물동량, e커머스 거래액
헬스케어	양로원, 전문간호시설, 메디컬오피스 등 임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적인 수요 성장 기대	인구구조, 의료보험제도
특수형	데이터센터, 통신타워 등 IT관련 리츠, 카지노와 영화관 등 레저시설 리츠, 목재판매를 주 수익으로하는 임야리츠 등 다양한 구성	전방 수요에 따라 다양한 지표 적용

* 상기 분류는 GICS Sub-Sector 분류 기준에 의거

* 상기 핵심지표는 예시이며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다른 지표 적용 가능

▪ 주요 시장인 미국 외에도 정책적,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부동산의 임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국가에서 Bottom-up 분석을 통해 밸류에이션과 배당 메리트가 높은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하고자 합니다. 특히 배당지급 빈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복리효과를 통한 장기 고수익 추구하고자 합니다.

▪ 정량적 분석(Quant Screening)을 통해 이익성장, 부채비율, 밸류에이션과 배당수익 등 평가 지표를 적용해 우수한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합니다.
▪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합니다.
▪ 환 노출형: 투자 대상 자산에 별도로 환 헷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3) 투자운용프로세스

1단계 : 글로벌 전체 800여개 리츠 중 스크리닝을 통해 200여개의 투자 가능 유니버스 선정

✓ 시가총액, 일평균 거래량, 배당 지급주기 등 사전에 설정한 주요 변수를 기준으로 스크리닝

2단계 :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 방법을 통해 투자대상 후보 종목군 선별

✓ 정량적 평가: 이익 성장률, 부채비율 등 양적 지표를 Quant 방식으로 분류

✓ 정성적 평가: 지역별, 국가별, 세부 산업별 주요 트렌드를 반영하여 해당 종목의 사업모델, 배당정책 등을 고려해 후보 종목 선별

3단계 : 펀더먼탈 리서치 및 섹터별 자산배분

✓ 개별종목에 대한 bottom-up 리서치, 펀더먼탈 점검

✓ 펀더먼탈 리서치와 거시적인 주요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섹터별 자산배분

4단계 : 포트폴리오 구축 및 필요 시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운용 포로세스 전체 흐름도>



* FFO(Fund from Operation): 리츠의 지속가능한 현금흐름을 의미(당기순이익 + 감가상각비 - 1회성 자산매각 차익)
* P/FFO(Price to FFO): 주가를 1주당 FFO로 나눈 값, 주식의 P/E 밸류에이션 지표에 해당
* P/NAV(Price to NAV): 주가를 1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 주식의 P/B 밸류에이션 지표에 해당
* NOI(Net Operating Income): 리츠의 보편적인 이익 규모(임대수익 – 관리비용)

모집합투자기구 : KCGI 아시아테크놀로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개요

-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에 기반을 두거나 아시아에서 창출하는 수익있는 기업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합니다.

2) 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IT 기업 및 IT산업과 연관된 기업들 중, ⅰ)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ⅱ)아시아에서 창출하는 수익이 있는 기업들을 상향식(Bottom-Up) 분석을 통해 선별, 발굴하여 장기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시아에 기반을 두거나 아시아에서 창출하는 수익있는 기업의 주식이란, 아시아에 상장되어 있거나, 아시아 지역 외에 상장되어 있더라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자산 중 한 항목이라도 1/3 이상이 아시아에서 발생하거나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② 투자지역, 시장, 세부 산업별 전망,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③ 환 노출형 : 이 투자신탁은 투자 대상자산에 원칙적으로 환 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통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환헤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단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통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외

화표시자산인 주식 등에 투자함에 따라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일부 노출됩니다. 투자대상 국가의 통화에 대해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통화의 환율변동 위험이 있으며, 외국 주식 등 외화표시자산은 환율 하락시(상승시) 환차손(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헤지의 장단점

· 장점 : 환헤지할 경우 환율이 하락(원화평가절상)시 발생하는 환차손(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헤지포지션에서 발생된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으므로 환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점 : 환헤지할 경우 환율이 상승(원화평가절하)시 발생하는 환차익(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헤지포지션에서 발생된 손실에 충당해야 하므로 환차익을 얻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환위험 헤지시 거리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④ 투자운용프로세스

[1단계] : 유니버스 구축

➢ IT기업 혹은 IT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면서 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아시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로 유니버스 구축

[2단계] : 시장지표를 활용한 1차 압축

➢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을 고려해 투자가능 대상 기업 1차 스크리닝, 1,000여개 기업으로 압축

[3단계] : 재무지표를 활용한 2차 압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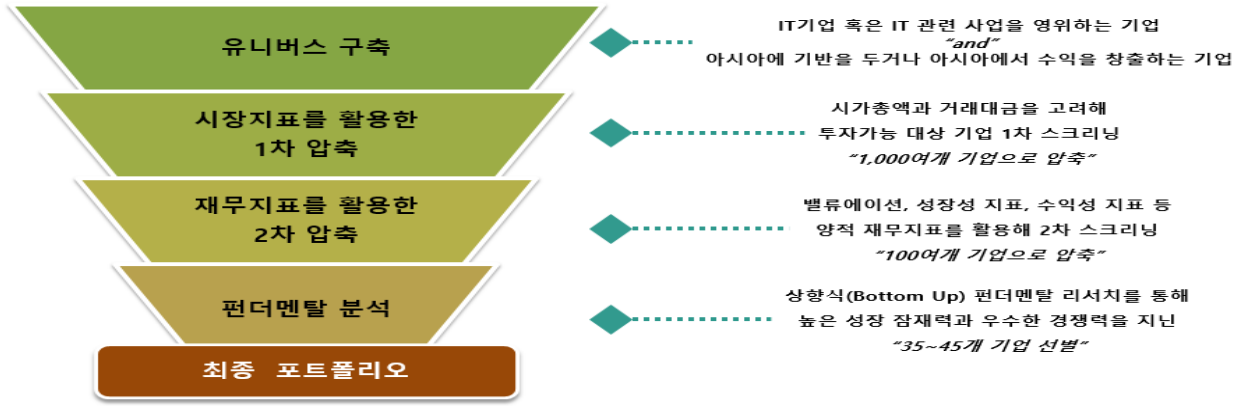
➢ 밸류에이션, 성장성 지표, 수익성 지표 등 약적 재무지표를 활용해 2차 스크리닝, 100여개 기업으로 압축

[4단계] : 펀더멘탈 분석 및 최종 포트폴리오 구축

➢ 상향식(Bottom-Up) 펀더멘탈 리서치를 통해 높은 성장 잠재력과 우수한 경쟁력을 지닌 기업을 최종 선별, 35~45개 기업으로 포트폴리오 구축

* Bottom-Up 방식(상향식 분석 방식) : 기업분석→산업분석→거시경제순으로 분석하는 방식

***포트폴리오 운용프로세스 전체 흐름**



모집합투자기구 : KCGI글로벌성장기반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개요

- 이 투자신탁은 인프라산업에 관련된 국내·외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외주식에 투자합니다.

2) 모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포함하여 미주, 유럽, 아시아, 이머징마켓 등 다양한 국가·지역의 인프라산업 관련 및 인프라 확충에 따른 수혜 종목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 지역별, 국가별 인프라 산업전망, 인프라 세부 섹터의 분석을 통하여 해외,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투자지역, 시장, 세부 산업별 전망,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며, 투자 대상 종목군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프라 투자 대상 종목군	GICS 섹터 분류	GICS 산업분류
① 인프라 산업 개발, 관리, 소유 또는 운영 관련 종목	유틸리티	전기공익 사업체, 가스 공익 사업체, 복합 공익 사업체, 수도 공익 사업체, 독립 전력 생산업체 및 에너지 거래업체 등
	산업재	운송 인프라, 도로와 선로, 건설과 엔지니어링 등
	통신서비스	다각화된 전기통신 서비스, 무선 전기통신 서비스 등
	에너지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석유·가스·소모 연료 등
인프라 투자 대상 종목군	**정의**	
② 인프라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회사 종목	인프라 자산군에만 투자하는 회사에 한함.	
③ 인프라 확충에 따른 수혜 종목	정부인프라 시설확대/개발 정책, 인프라 노후화 개선, 신규설비 확충 등	
④ 민관합자투자사업(PPP)수혜 종목	민관합자투자사업(PPP) : 민간은 위험 부담을 지고 도로 등의 공공 인프라 투자와 건설, 유지나 보수 등	
⑤ 4차 산업 관련 인프라 종목주1)	디지털 인프라(IT/인공지능 인프라, 제조 인프라, 통신 인프라), 헬스케어 인프라, 환경 인프라(재생에너지 인프라), 생활 인프라(주거 인프라, 금융 인프라, 문화 인프라, 교육 인프라, 안전 인프라) 등	

주1)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프라 산업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발생,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전통적 인프라산업인 교통, 에너지, 물류뿐만이 아니라 광의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의료, 교육, 금융, 안전시스템 등에 걸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광의의 4차 산업 관련 인프라의 정의로 표기하였으며, 4차 산업 관련 인프라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사례는 4차 산업 관련 인프라를 모두 포함하지 않으며, 단순 예시자료입니다.

4차 산업 관련 인프라 예시		
대분류	**소분류**	**예시**
디지털 인프라	IT/인공지능 인프라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AI(인공지능) 기술 활용 기업,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관련 기업, 데이터센터 및 핵심 부품 설비, 반도체 기업 등
	제조 인프라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IoT) 제조 등
	통신 인프라	차세대(예: 5G, 6G 등) 기반 서비스, IoT(사물인터넷) 기업, 광네트워크, 통신 장비, 에지 컴퓨팅, CDN, VR/AR 기업 등
헬스케어 인프라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ICT 기술 활용한 헬스케어 기업, 스마트 진단,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등
환경 인프라	재생에너지 인프라	전기차 충전망 및 관련 부품, 대중교통망 확충, 자율주행 관련 기업, 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등
생활 인프라	주거 인프라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무인) 쇼핑 시설, 옴니채널 O2O 인프라 등
	금융 인프라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이 원활히 기능하도록 하는 금융 서비스, 지급결제 시스템, 차세대 결제수단 제공 기업 등
	문화 인프라	오프라인을 포함한 온라인/XR(VR, AR 등) 문화기반시설 등

	교육 인프라	Connected Learning, XR(VR, AR 등)·햅틱기술, 실감형 교육 기업 등
	안전 인프라	드론 활용 안전시스템, 소셜네트워킹 활용 방재시스템의 현실화, 차세대 보안 기업, 로봇 기업 등

<투자운용프로세스>

[1 단계] :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방법 등으로 인프라관련 사전 스크린하여 투자가능한 종목 선정

- 자산배분 전략에 따른 지역별, 국가별, 세부 산업별 자산배분 계획을 수립
- 정량, 정성적 분석을 통한 투자대상 종목군 선정 및 리서치를 통하여 개별 종목 선정을 위한 종목 유니버스를 구축

[2 단계] : 내부 종목 선정 모델을 통해 종목 선정

- 자산배분 전략에 부합하는 종목군을 대상으로 Model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 점검

[3 단계] :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 가능한 국내외 기업 종목으로 구성

- Model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분석과 판단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축
- 자산배분전략 및 단계별 투자원칙에 따라 편입 포트폴리오 유지·관리
- 유동성 고려

[4 단계] : 지속적 분석 및 모니터링

-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각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분석을 통하여 투자 종목의 모니터링은 및 사후관리

포트폴리오 운용프로세스 전체 흐름도



3) 환위험 관리 : 환위험 노출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집합투자업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전략에 따라 환위험관리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 이 투자전략은 일괄신고서 작성시점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제시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의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최적의 대안이 존재할 경우 별도의 사전예고 없이 변경 시행될 수도 있으며, 이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사유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을 통한 자산배분을 실시하며 다양한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모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 합니다. 따라서 투자전략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 배분과 Target date별 투자 비

중의 변화를 반영하고 참고할 만한 목적의 비교지수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특정 비교지수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판단시 보다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교지수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비교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위험관리체계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모집합투자기구의 개별 위험관리체계를 통해서 투자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아래의 프로세스는 모집합투자기구의 공통적인 위험관리체계입니다.

1. 사전적 리스크관리 : 운용전략과 투자원칙을 고려하여 적정 위험/수익 포트폴리오 구축 점검
2. 상시 리스크 모니터링 : 국가 및 시장 또는 개별증권의 고유한 위험 요인, 벤치마크 변동성, 분산투자 전략 및 상관관계 분석 등
3. 사후적 리스크관리 : 성과를 감안한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 적정 프로파일 관리

나.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90%이상 투자합니다. 따라서 투자자산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주식가격은 투자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채권 또는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며,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한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국내 및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들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외국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의해 편입된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국주식 또는 외국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나, 투자대상 국가의 통화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통화의 환율변동 위험이 있으며, 외국 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은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자산을 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주식, 채권, 통화 등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표준화된 장내시장거래와 달리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장치가 없고, 규제와 감독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시세가 형성되는 않는 등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통화관련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라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 위험	통화선도거래 또는 통화스왑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 불이행 발생시 미정산 수익을 상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환율변동 제거 효과가 사라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시 계약조건에 의해 현재 환율이 계약환율 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계약이 부득이 조기에 종료되어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가능하며, 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환매조건부 매도로 운용할 수 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국가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중 국내외의 주식 또는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요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별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해외 선진국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폐쇄형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거래량과 유동성 기준이 충분한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투자하지만 폐쇄형 집합투자증권의 개별요인으로 인해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에 비해서 유동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순자산 가치 대비 매매가격의 괴리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해외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동 ETF매매에 대한 과세처리 방법(매수·매도시의 해당 ETF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매도가격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인해 매매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해당 매매에 적용되는 과표기준가격이 상승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국내·외 상장리츠 등 부동산 관련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투자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국가나 지역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의 일부 모투자신탁은 아시아시장의 정보기술 업종 주식 또는 신흥시장의 주식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국가, 업종 및 종목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선진국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의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추적오차가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탁의 원본액이 일정액 미만으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거나, 수익자가 규정에서 정하는 수 미만이거나, 상장된 거래소에서의 월평균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장을 폐지하여야 하는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습니다.
환매지연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국제결제와 관련된 송금지연 발생 및 투자대상 국가의 증권거래소가 장기간 휴장할 경우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외화자산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신탁에서 보유중인 종목에 대하여 해당거래소 종가가 모두 상승하여도 신탁재산 평가 적용일의 차이로 특정일의 기준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주문 또는 결제상의 오류 등 운용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발생 가능성이 국내 투자보다 높습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주문, 결재, 평가, 관리 등 관련)의 업무처리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운용 실무

	상 오류는 기준 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오류 발생 시, 그로 인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2조 상 기준가 오류 변경 공고 기준(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기준으로 기준가의 1천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오류가 이러한 오차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 환매한 투자자들 간 손익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집합투자기구가 최초 설정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이 투자신탁은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다른 투자신탁의 혼합채권형 모투자신탁인 "KCGI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과 주식형 모투자신탁인 "KCGI글로벌diversified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의 자투자신탁으로 자동변경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는 '11.매입,환매,전환기준'의 '나.환매'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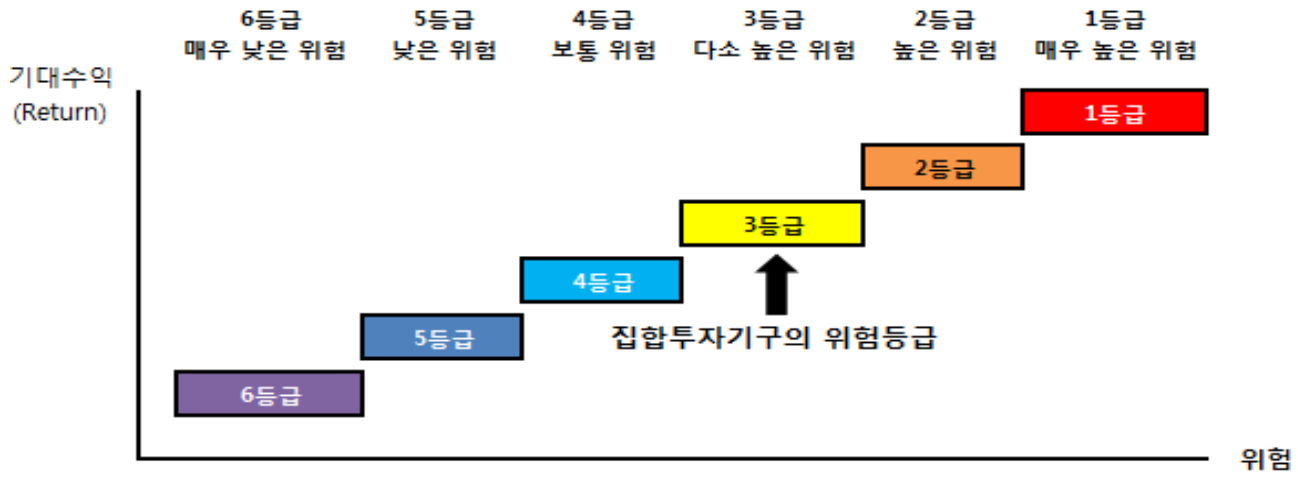
※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 27.1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국내외 주식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ETF 등) 및 리츠 등에 투자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은 투자위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6개의 투자위험 등급 중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이 해외 주식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ETF 등) 및 리츠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투자원본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은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제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을 고려하여 투자위험등급을 분류 하였으며,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 이란?

수익률 변동성은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한 97.5% VaR 모형 사용을 의미합니다.



※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모형 사용)

등급	1(고위험)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펀드 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위험등급	변경사유
2023-11-10	2 등급→4 등급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반영한 위험등급 변경
2026-11-11	4 등급→3 등급	펀드 결산에 따른 투자위험 등급 변경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은 판매회사**(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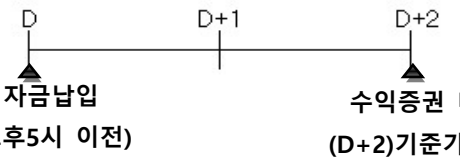
이 집합투자기구의 가입가능한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비율(%)						
보수구조	종류A	종류Ae	종류AG	종류CI	종류CW	종류CF	종류S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수수료선취-온라인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가입자격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로,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 집합투자증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최초 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투자자용 집합투자증권	Wrap account 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금전신탁 전용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전용 집합투자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종류S-T 및 S-P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증권	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4%이내	납입금액의 0.2%이내	납입금액의 0.3%이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구분	지급비율(%)						
보수구조	종류C-P	종류C-Pe	종류C-P2	종류C-Pe2	종류S-P2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디폴트옵션-퇴직연금
가입자격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 전용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자산운용사의 공동 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S-T 및 S-P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다른 종류[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인 집합투자증권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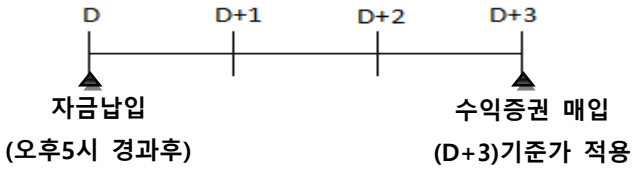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단,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

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단, 최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을 적용)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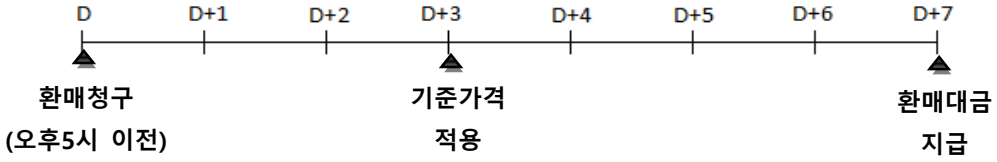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판매회사**(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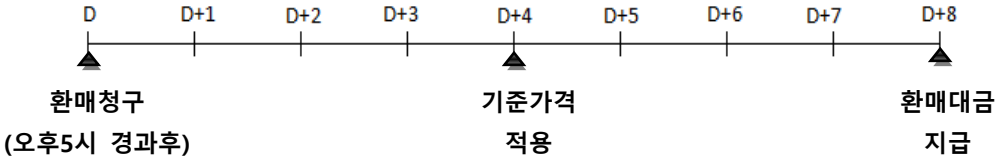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나)**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환매(매입)청구시 취소 또는 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 이전까지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 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6)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6 영업일전(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 7 영업일전)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또는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중도환매를 허용하는 투자신탁입니다.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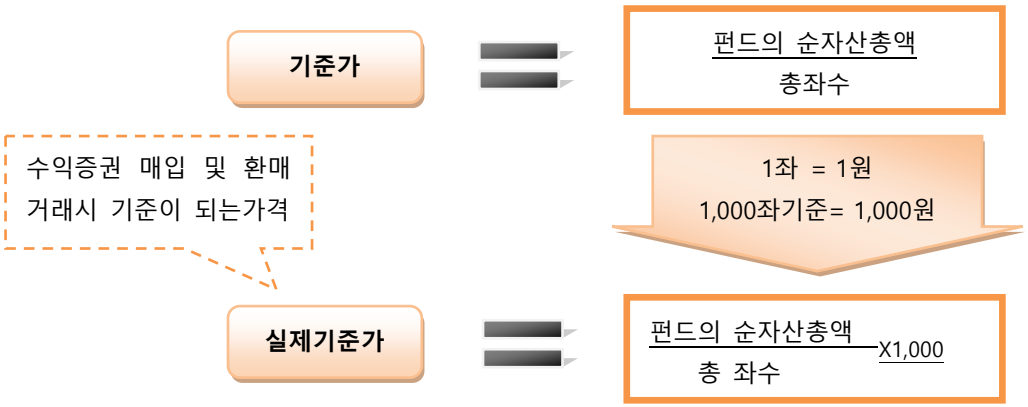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주1)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로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이 동일하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 가 방 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외화표시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날에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④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평가
⑥ 외화표시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으로 평가
⑨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⑩ 파생결합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 및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⑪ 상장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⑫ 비상장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모자형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⑬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 전날에 공고(또는 제공)된 기준가격으로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A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4%이내**	-	-	-
Ae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로,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2%이내**	-	-	
AG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3%이내**	-	-	-
CI	최초 납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투자자용 집합투자증권			-	-
CW	Wrap account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금전신탁 전용 집합투자증권	-	-	-	

C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전용 집합투자증권	-	-	-	-
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종류S-T 및 S-P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	3년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	-	-	
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	-	-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	-	-	
C-Pe2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전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	-	-	
S-P2	자산운용사의 공동 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S-T 및 S-P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투자자 전용이며, 다른 종류[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	-	-	-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전용으로 설정·설립된 집합투자증권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초설정일~2025.12.31]

명칭(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보수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	증권거래비용

									구 보수포함)	
A	0.2400	0.4300	0.0300	0.0220	0.7220	0.8800	-	0.7220	0.7470	-
Ae	0.2400	0.2100	0.0300	0.0220	0.5020	0.5800	-	0.5020	0.5270	-
AG	0.2400	0.3300	0.0300	0.0220	0.6220	-	-	0.6220	0.6470	-
CI	0.2400	0.0500	0.0300	0.0220	0.3420	-	-	0.3420	0.3670	-
CW	0.2400	0.0000	0.0300	0.0220	0.2920	-	-	0.2920	0.3170	-
CF	0.2400	0.0400	0.0300	0.0220	0.3320	-	-	0.3320	0.3570	-
S	0.2400	0.1900	0.0300	0.0220	0.4820	-	-	0.4820	0.5070	-
C-P	0.2400	0.4400	0.0300	0.0220	0.7320	-	-	0.7320	0.7570	-
C-Pe	0.2400	0.2200	0.0300	0.0220	0.5120	-	-	0.5120	0.5370	-
C-P2	0.2400	0.5200	0.0300	0.0220	0.8120	-	-	0.8120	0.8370	-
C-Pe2	0.2400	0.2600	0.0300	0.0220	0.5520	-	-	0.5520	0.5770	-
S-P2	0.2400	0.2250	0.0300	0.0220	0.5170	-	-	0.5170	0.5420	-
O	0.2400	0.1600	0.0300	0.0220	0.4520	-	-	0.4520	0.4770	-
지급 시기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2026.01.01~2030.12.31]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 리회사보수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비용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거래비용
A	0.2200	0.3900	0.0300	0.0220	0.6620	0.8800	-	0.6620	0.6870	-
Ae	0.2200	0.1900	0.0300	0.0220	0.4620	0.5800	0.0036	0.4656	0.5564	0.2189
AG	0.2200	0.2900	0.0300	0.0220	0.5620	-	-	0.5620	0.5870	-
CI	0.2200	0.0400	0.0300	0.0220	0.3120	-	-	0.3120	0.3370	-
CW	0.2200	0.0000	0.0300	0.0220	0.2720	-	-	0.2720	0.2970	-
CF	0.2200	0.0300	0.0300	0.0220	0.3020	-	-	0.3020	0.3270	-
S	0.2200	0.1700	0.0300	0.0220	0.4420	-	0.0035	0.4455	0.5361	0.2174
C-P	0.2200	0.4200	0.0300	0.0220	0.6920	-	-	0.6920	0.7170	-
C-Pe	0.2200	0.2100	0.0300	0.0220	0.4820	-	0.0037	0.4857	0.5766	0.2208
C-P2	0.2200	0.5000	0.0300	0.0220	0.7720	-	0.0040	0.7760	0.8669	0.2411
C-Pe2	0.2200	0.2500	0.0300	0.0220	0.5220	-	0.0040	0.5260	0.6169	0.2444
S-P2	0.2200	0.2000	0.0300	0.0220	0.4720	-	0.0036	0.4756	0.5665	0.2182
O	0.2200	0.1400	0.0300	0.0220	0.4120	-	-	0.4120	0.4370	-
지급 시기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2031.01.01~투자신탁해지일]

명칭(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보수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거래비용
A	0.2000	0.3500	0.0300	0.0220	0.6020	0.8800	-	0.6020	0.6270	-
Ae	0.2000	0.1700	0.0300	0.0220	0.4220	0.5800	-	0.4220	0.4470	-
AG	0.2000	0.2500	0.0300	0.0220	0.5020	-	-	0.5020	0.5270	-
CI	0.2000	0.0300	0.0300	0.0220	0.2820	-	-	0.2820	0.3070	-
CW	0.2000	0.0000	0.0300	0.0220	0.2520	-	-	0.2520	0.2770	-
CF	0.2000	0.0200	0.0300	0.0220	0.2720	-	-	0.2720	0.2970	-
S	0.2000	0.1500	0.0300	0.0220	0.4020	-	-	0.4020	0.4270	-
C-P	0.2000	0.4000	0.0300	0.0220	0.6520	-	-	0.6520	0.6770	-
C-Pe	0.2000	0.2000	0.0300	0.0220	0.4520	-	-	0.4520	0.4770	-
C-P2	0.2000	0.4800	0.0300	0.0220	0.7320	-	-	0.7320	0.7570	-
C-Pe2	0.2000	0.2400	0.0300	0.0220	0.4920	-	-	0.4920	0.5170	-
S-P2	0.2000	0.1800	0.0300	0.0220	0.4320	-	-	0.4320	0.4570	-
O	0.2000	0.1200	0.0300	0.0220	0.3720	-	-	0.3720	0.3970	-
지급시기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매 3 개월 후급	-	-	사유발생시	-	-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4.10.23 ~ 2025.10.22]

* 기타비용 :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4.10.23 ~ 2025.10.22]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증권거래비용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매매수수료, 대차관련수수료, REPO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매매수수료, 해외파생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84,321

* 금융비용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여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의 추정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요 집합투자기구들의 보수/수수료는 연 0.0250%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추정치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2026.2.27기준)

주7) 설정일로부터 5년 단위로 보수 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기타 비용, 피투자 보수 및 증권거래 비용 등은 보수 체계 변경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반영한 추정치이며, 실제 발생 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명칭(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8	178	252	408	86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0	183	260	422	894
Ae	수수료선취-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8	117	169	281	59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5	133	193	321	684
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7	147	210	344	73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0	153	218	358	764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2	65	101	176	39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5	71	109	190	428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8	57	88	153	34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0	62	96	167	378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등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1	63	97	170	38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34	69	105	184	415
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6	93	143	250	55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3	109	167	291	641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1	145	222	386	86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3	150	230	400	893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0	102	156	272	60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7	117	180	313	696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0	162	249	433	95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7	178	272	473	1040
C-Pe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4	110	169	295	65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1	126	192	335	745
S-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9	100	153	267	58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6	115	176	307	678
O	수수료미징구-디폴트옵션-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2	86	133	231	52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45	92	141	245	552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연간 0.0250%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기타비용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설정일(2020.10.23)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한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1.1 이후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이익 지급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합니다. (※2024년말까지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에서 환급 받아 세전 기준가로 환원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집합투자기구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C-P(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수익증권, 종류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

	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금액 한도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 연간 저축금액 중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새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추가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제외) 연금소득이 1천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년1월1일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종류 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수익증권, 종류C-Pe2(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및 S-P2(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

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2)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방법 등에 따라 과세

3)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름.



주1)2015년 이후 수령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세율임.
주2)연금수령 한도산식, 연금소득세 세율은 연금저축과 동일
<자료출처>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

※ 퇴직연금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준가는 일반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있으며, 이들 가격은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일반기준가란,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과 채권 등의 모든 자산을 그날의 시가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 등의 수입을 추가하여 자산총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에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차감하여 순자산총액을 산출하고, 그 날의 수익증권(또는 주권)의 총좌수로 나누어 기준가격이 산출됩니다.
과표기준가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수익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등은 과세대상 수익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표산정을 위해 산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즉 거래는 기준가격으로 하고 과세는 과표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5 기(2024.10.23 - 2025.10.22)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 4기(2023.10.23 - 2024.10.22)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3기(2022.10.23 - 2023.10.22)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 재무정보

KCGI 프리덤적격 TDF203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단위: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5 기	제 4기	제 3기
	(2025.10.22)	(2024.10.22)	(2023.10.22)
운용자산	49,948,668,562	25,544,080,694	18,182,361,508
증권	49,504,822,332	25,333,377,307	17,845,123,469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443,846,230	210,703,387	337,238,039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50,118,537	264,083,126	37,837,127
자산총계	50,298,787,099	25,808,163,820	18,220,198,635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464,780,353	295,088,098	65,600,349
부채총계	464,780,353	295,088,098	65,600,349
원본	34,170,444,237	19,442,987,994	16,376,460,436
수익조정금	2,186,677,400	386,327,361	-30,114,783
이익잉여금	13,476,885,109	5,683,760,367	1,808,252,633
자본총계	49,834,006,746	25,513,075,722	18,154,598,286

[단위: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5 기	제 4기	제 3기
	(2024.10.23 - 2025.10.22)	(2023.10.23 - 2024.10.22)	(2022.10.23 - 2023.10.22)
운용수익	5,323,844,435	3,832,735,957	725,209,856
이자수익	7,205,711	7,993,113	10,358,832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5,316,638,724	3,824,742,844	714,851,024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85,775,807	111,037,850	89,158,910
관련회사 보수	185,775,807	111,037,850	89,158,91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9,499,075	5,383,282	4,374,871
당기순이익	5,128,569,553	3,716,314,825	631,676,075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위 재무재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재무상태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3)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KCGI프리덤적격TDF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4.10.23 - 2025.10.22)			전기(2023.10.23 - 2024.10.22)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	-	-	-	-	-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	-	-	-	-	-
부동산	-	-	-	-	-	-
장내파생상품	-	-	-	-	-	-
장외파생상품	-	-	-	-	-	-
기타(REPO,대차,콜 등)	-	-	-	-	-	-
합계	-	-	-	-	-	-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2)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KCGI 글로벌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4.02.03 - 2025.02.02)			전기(2023.02.03 - 2024.02.02)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	-	-	1,520	2	0.1003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29,083	23	0.0806	35,141	28	0.0804
부동산	-	-	-	-	-	-
장내파생상품	-	-	-	-	-	-
장외파생상품	-	-	-	-	-	-

기타(REPO,대차,콜 등)	-	-	-	60,611	0.07	0.0001
합계	29,083	23	0.0806	97,272	30	0.0307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2)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KCGI 아시아테크놀로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4.03.23 - 2025.03.22)			전기(2023.03.23 - 2024.03.22)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100,679	81	0.08	64,557	55	0.085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4,858	4	0.0842	-	-	-
부동산	-	-	-	-	-	-
장내파생상품	-	-	-	-	-	-
장외파생상품	-	-	-	-	-	-
기타(REPO,대차,콜 등)	-	-	-	13,426	0.02	0.0001
합계	105,537	85	0.0802	77,983	55	0.0704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2)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KCGI글로벌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4.10.07 - 2025.10.06)			전기(2023.10.07 - 2024.10.06)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99,630	78	0.0782	200,298	162	0.0808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72,724	58	0.08	158,728	127	0.08
부동산	-	-	-	-	-	-
장내파생상품	-	-	-	-	-	-
장외파생상품	-	-	-	-	-	-
기타(REPO,대차,콜 등)	-	-	-	527	0.001	0.0002
합계	172,354	136	0.079	359,553	289	0.0803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2)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KCGI이머징마켓증권모투자신탁[주식]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4.10.07 - 2025.10.06)			전기(2023.10.07 - 2024.10.06)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130,066	109	0.0838	190,629	160	0.0841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10,983	9	0.0796	11,340	9	0.08

부동산	-	-	-	-	-	-
장내파생상품	-	-	-	-	-	-
장외파생상품	-	-	-	-	-	-
기타(REPO,대차,콜 등)	-	-	-	332	0.001	0.0002
합계	141,049	118	0.0835	202,301	169	0.0837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2)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KCGI글로벌성장기반증권모투자신탁[주식]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4.01.17 - 2025.01.16)			전기(2023.01.17 - 2024.01.16)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214,788	173	0.0807	45,188	37	0.0816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2,917	2	0.08	4,764	4	0.0833
부동산	-	-	-	-	-	-
장내파생상품	-	-	-	-	-	-
장외파생상품	-	-	-	-	-	-
기타(REPO,대차,콜 등)	-	-	-	653	0.001	0.0001
합계	217,704	176	0.0807	50,606	41	0.0807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2)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KCGI글로벌diversified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4.06.15 - 2025.06.14)			전기(2023.06.15 - 2024.06.14)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620,561	511	0.0824	402,287	326	0.081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843,961	688	0.0815	569,137	456	0.0801
부동산	-	-	-	-	-	-
장내파생상품	-	-	-	-	-	-
장외파생상품	-	-	-	-	-	-
기타(REPO,대차,콜 등)	-	-	-	174,898	0.22	0.0001
합계	1,464,522	1,199	0.0819	1,146,322	782	0.0682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2)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KCGI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4.11.02 - 2025.11.01)			전기(2023.11.02 - 2024.11.01)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503,643	503	0.0999	195,561	195	0.0999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10,154	10	0.1	-	-	-
부동산	-	-	-	-	-	-
장내파생상품	-	-	-	-	-	-
장외파생상품	-	-	-	-	-	-
기타(REPO,대차,콜 등)	4,305	0.02	0.0005	-	-	-
합계	518,102	513	0.0991	195,561	195	0.0999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2)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KCGI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4.07.23 - 2025.07.22)			전기(2023.07.23 - 2024.07.22)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	-	-	-	-	-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131,960	107	0.0813	78,359	63	0.08
부동산	-	-	-	-	-	-
장내파생상품	-	-	-	-	-	-
장외파생상품	-	-	-	-	-	-
기타(REPO,대차,콜 등)	-	-	-	8,161	0.01	0.0001
합계	131,960	107	0.0813	86,520	63	0.0725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2)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KCGI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4.05.18 - 2025.05.17)			전기(2023.05.18 - 2024.05.17)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	-	-	-	-	-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	-	-	-	-	-
부동산	-	-	-	-	-	-
장내파생상품	268,180	6	0.0022	401,426	9	0.0022
장외파생상품	-	-	-	-	-	-
기타(REPO,대차,콜 등)	3,148,133	8	0.0002	871,739	5	0.0006
합계	3,416,313	14	0.0004	1,273,164	14	0.0011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2)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KCGI 프리덤적격 TDF203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	-	-	-	-	-	32.03

KCGI 글로벌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	-	-	-	-	-	32.03

KCGI 아시아테크놀로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2,878,920	54,172	2,511,125	46,516	32,217	144.38	32.03

주1)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KCGI 글로벌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252,700	50,435	210,050	49,195	37,216	132.19	32.03

주1)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KCGI 이머징마켓증권모투자신탁[주식]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6,875,769	68,315	5,724,730	61,765	45,196	136.66	32.03

주1)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KCGI 글로벌성장기반증권모투자신탁[주식]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837,610	132,720	546,430	82,067	37,368	219.62	32.03

주1)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KCGI 글로벌 diversified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1,497,990	314,706	1,779,137	305,890	139,424	219.4	32.03

주1)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KCGI 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3,147,132	290,117	2,154,935	213,779	191,476	111.65	32.03

주1)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KCGI 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	-	-	-	-	-	32.03

주1)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KCG 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	-	-	-	-	-	32.03

주1)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원]

과 목	제5기(2025.10.22)		제4기(2024.10.22)		제3기(2023.10.22)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443,846,230		210,703,387		337,238,039
1. 현금및현금성자산	443,846,230		210,703,387		337,238,039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49,504,822,332		25,333,377,307		17,845,123,469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9,504,822,332		25,333,377,307		17,845,123,469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350,118,537		264,083,126		37,837,127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494,761		368,765		497,478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349,623,776		263,714,361		37,339,649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50,298,787,099		25,808,163,820		18,220,198,635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464,780,353		295,088,098		65,600,349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08,098,076		263,561,807		41,981,607	
4. 수수료미지급금	56,682,277		31,526,291		23,618,742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464,780,353		295,088,098		65,600,349
자 본						
1. 원 본	34,170,444,237		19,442,987,994		16,376,460,436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15,663,562,509		6,070,087,728		1,778,137,850	
(발행좌수 당기: 34,170,444,237 좌	이익잉여금	13,476,885,109		5,683,760,367		1,808,252,633
전기: 19,442,987,994 좌	수익조정금	2,186,677,400		386,327,361		-30,114,783
전전기: 16,376,460,436 좌)						
(기준가격 당기: 1,447.61 원						
전기: 1,296.72 원						
전전기: 1,102.32 원)						
자 본 총 계		49,834,006,746		25,513,075,722		18,154,598,28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50,298,787,099		25,808,163,820		18,220,198,635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5기(2024.10.23-2025.10.22) 금 액		제4기(2023.10.23-2024.10.22) 금 액		제3기(2022.10.23-2023.10.22)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7,205,711		7,993,113		10,358,832
1. 이 자 수 익	7,205,711		7,993,113		10,358,832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5,421,226,251		3,904,833,827		837,418,822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2,957,352,619		2,938,146,024		402,774,629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2,463,873,632		966,687,803		434,644,193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04,587,527		80,090,983		122,567,798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20,273	
8. 기타거래손실	104,587,527		80,090,983		122,547,525	
운 용 비 용		195,274,882		116,421,132		93,533,781
1. 운용수수료	88,439,669		53,906,740		43,396,729	
2. 판매수수료	86,281,638		50,393,406		40,338,313	
3. 수탁수수료	11,054,500		6,737,704		5,423,868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9,499,075		5,383,282		4,374,871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5,128,569,553		3,716,314,825		631,676,075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150087881		0.191139079		0.038572198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KCGI 프리덤적격 TDF203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10.23 - 2025.10.22	192	250	213	294	72	98	334	499
2023.10.23 - 2024.10.22	162	178	65	81	34	43	192	255
2022.10.23 - 2023.10.22	156	168	34	38	28	32	162	182

주 1) 2024.10.23 - 2025.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69,457,851 좌/1,403,398,128 원

주 2) 2023.10.23 - 2024.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08,223,164 좌/529,349,324 원

주 3) 2022.10.23 - 2023.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64,145,501 좌/180,940,234 원

KCGI 프리덤적격 TDF203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 Ae(수수료선취-온라인)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10.23 - 2025.10.22	17	22	6	8	5	7	18	27
2023.10.23 - 2024.10.22	18	19	4	5	4	5	17	23
2022.10.23 - 2023.10.22	20	22	4	4	7	7	18	20

주 1) 2024.10.23 - 2025.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7,424,969 좌/68,301,531 원

주 2) 2023.10.23 - 2024.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3,795,841 좌/43,617,150 원

주 3) 2022.10.23 - 2023.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2,845,809 좌/14,157,852 원

KCGI 프리덤적격 TDF203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 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10.23 - 2025.10.22	0.92	1.20	0.04	0.05	0.20	0.26	0.76	1.14
2023.10.23 - 2024.10.22	0.82	0.91	0.16	0.21	0.07	0.09	0.92	1.22
2022.10.23 - 2023.10.22	0.88	0.95	0.06	0.07	0.12	0.14	0.82	0.92

주 1) 2024.10.23 - 2025.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087,181 좌/3,033,064 원

주 2) 2023.10.23 - 2024.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405,716 좌/1,832,000 원

주 3) 2022.10.23 - 2023.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015,016 좌/1,123,711 원

KCGI 프리덤적격 TDF203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 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10.23 - 2025.10.22	132	170	34	46	15	21	150	222
2023.10.23 - 2024.10.22	118	129	30	37	16	20	132	173
2022.10.23 - 2023.10.22	107	115	25	28	14	16	118	131

주 1) 2024.10.23 - 2025.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28,343,745 좌/616,015,670 원
주 2) 2023.10.23 - 2024.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66,840,665 좌/343,918,580 원
주 3) 2022.10.23 - 2023.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33,801,218 좌/146,889,766 원

KCGI 프리덤적격 TDF203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 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10.23 - 2025.10.22	0.13	0.14	0.78	0.94	0.02	0.03	0.88	1.16
2023.10.23 - 2024.10.22	0.10	0.09	0.03	0.03	0	0	0.13	0.15
2022.10.23 - 2023.10.22	0.14	0.13	0.0010	0.0010	0.04	0.04	0.10	0.09

주 1) 2024.10.23 - 2025.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004,639 좌/2,578,674 원
주 2) 2023.10.23 - 2024.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50,395 좌/287,874 원

KCGI 프리덤적격 TDF203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 C-Pe2(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10.23 - 2025.10.22	30	38	172	229	45	59	157	225
2023.10.23 - 2024.10.22	15	16	26	32	10	12	30	39
2022.10.23 - 2023.10.22	17	17	3	3	5	5	15	16

주 1) 2024.10.23 - 2025.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70,210,430 좌/653,684,652 원
주 2) 2023.10.23 - 2024.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4,191,773 좌/105,077,878 원

KCGI 프리덤적격 TDF203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 S-P2(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4.10.23 - 2025.10.22	14	19	3	4	3	4	14	22
2023.10.23 - 2024.10.22	13	14	3	4	1	2	14	19
2022.10.23 - 2023.10.22	12	13	3	3	2	2	13	14

주 1) 2024.10.23 - 2025.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0,734,069 좌/59,784,537 원
주 2) 2023.10.23 - 2024.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6,320,794 좌/34,615,842 원
주 3) 2022.10.23 - 2023.10.22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6,783,670 좌/18,768,905 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4.12.06 ~25.12.05	23.12.06 ~25.12.05	22.12.06 ~25.12.05	20.12.06 ~25.12.05	20.10.23 ~25.12.05
KCGI 프리덤적격 TDF203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13.92	17.09	13.20	9.33	9.82
수익률변동성(%)	8.77	8.95	8.31	8.13	8.20
종류 Ae(수수료선취-온라인)	13.36	16.51	12.64	8.78	9.27
수익률변동성(%)	8.77	8.95	8.31	8.13	8.20
종류 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13.38	16.53	12.66	8.81	9.52
수익률변동성(%)	8.77	8.95	8.31	8.13	8.16
종류 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13.35	16.50	12.63	8.77	9.26
수익률변동성(%)	8.77	8.95	8.31	8.13	8.20
종류 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13.01	16.16	12.30		7.16
수익률변동성(%)	8.77	8.95	8.31		8.11
종류 C-Pe2(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13.30	16.45	12.58	8.73	8.70
수익률변동성(%)	8.77	8.95	8.31	8.13	8.13
종류 S-P2(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13.34	16.49	12.62	8.77	9.73
수익률변동성(%)	8.77	8.95	8.31	8.13	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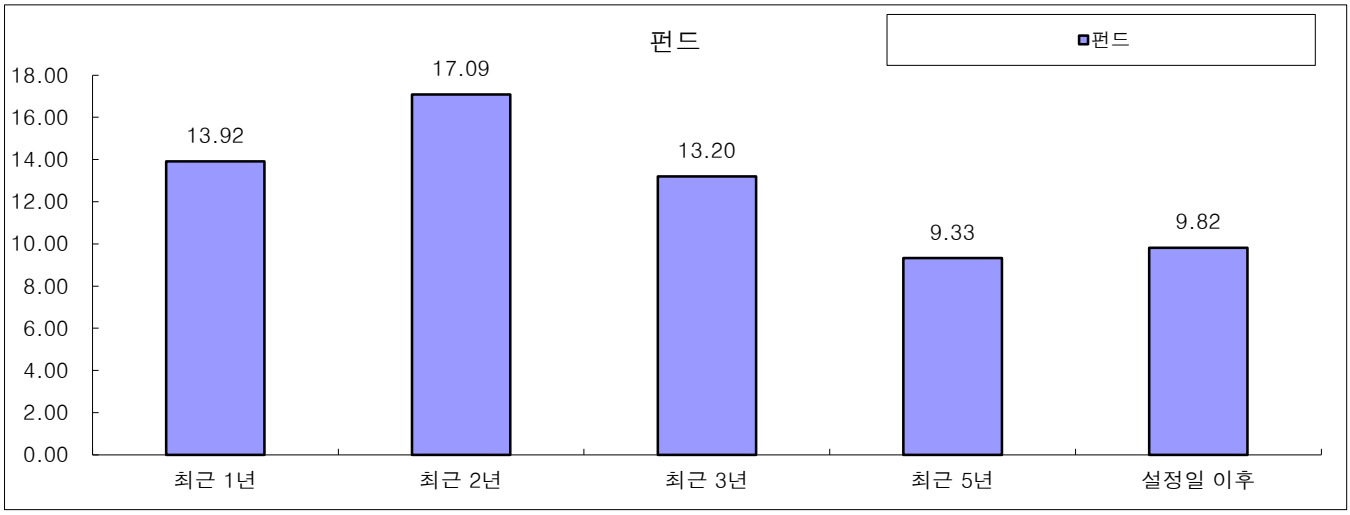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말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24.12.06 ~25.12.05	23.12.06 ~24.12.05	22.12.06 ~23.12.05	21.12.06 ~22.12.05	20.12.06 ~21.12.05
KCGI 프리덤적격 TDF2035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13.92	20.33	5.79	-6.51	15.16

재간접형]					
종류 Ae(수수료선취-온라인)	13.36	19.75	5.26	-6.98	14.59
종류 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13.38	19.77	5.28	-6.96	14.62
종류 C-Pe(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13.35	19.74	5.25	-6.99	14.58
종류 C-P2(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13.01	19.39	4.95	-7.26	7.64
종류 C-Pe2(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13.30	19.69	5.21	-7.03	14.54
종류 S-P2(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13.34	19.73	5.25	-7.00	14.58

주1)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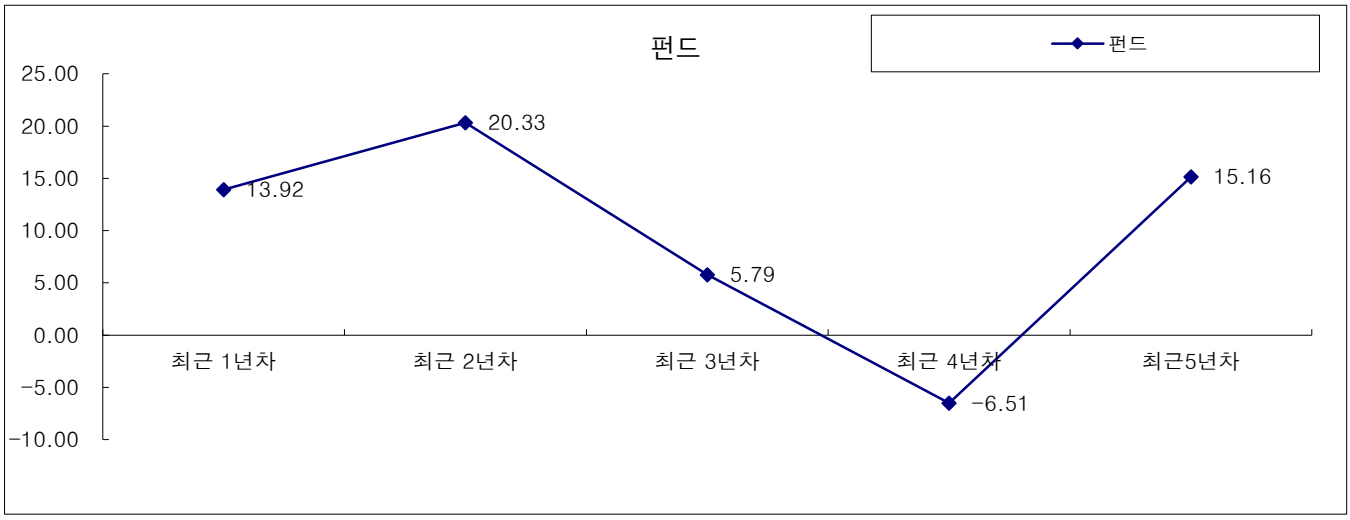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5.10.22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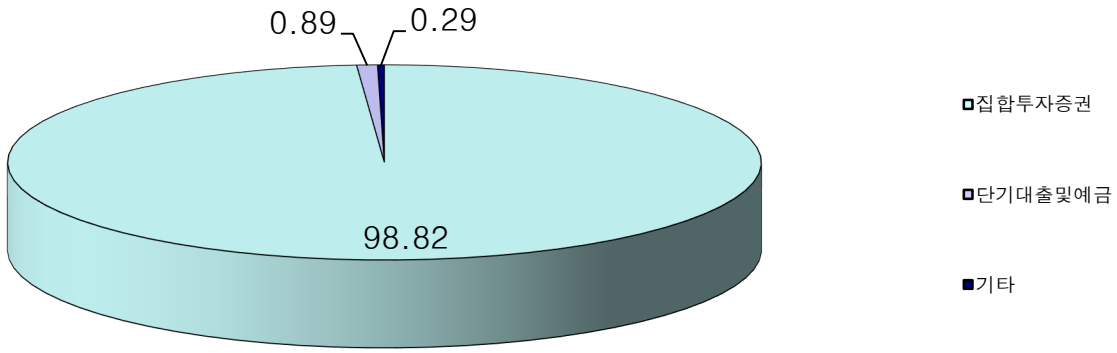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495	0	0	0	0	0	4	1	501
	(0.00)	(0.00)	(0.00)	(98.82)	(0.00)	(0.00)	(0.00)	(0.00)	(0.00)	(0.89)	(0.29)	(100.00)
합계	0	0	0	495	0	0	0	0	0	4	1	501
	(0.00)	(0.00)	(0.00)	(98.82)	(0.00)	(0.00)	(0.00)	(0.00)	(0.00)	(0.89)	(0.29)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KCGI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25.10.22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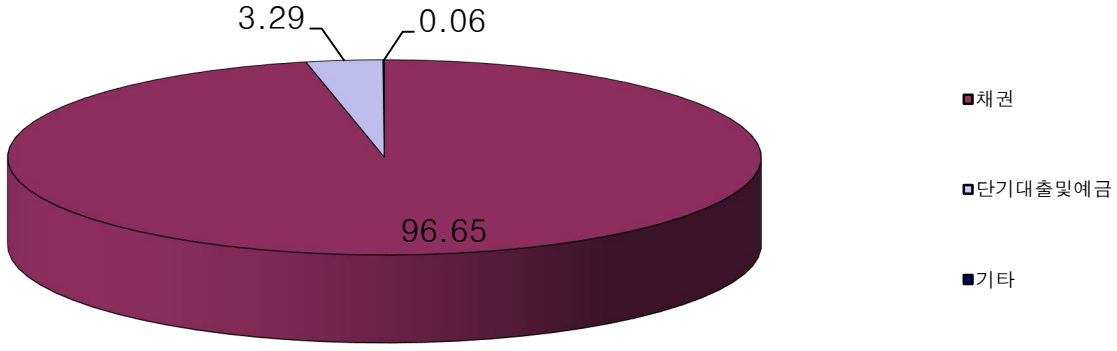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1,503	0	0	0	0	0	0	0	51	1	1,555
	(0.00)	(96.6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29)	(0.06)	(100.00)
합계	0	1,503	0	0	0	0	0	0	0	51	1	1,555
	(0.00)	(96.6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29)	(0.06)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KCGI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025.10.22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기타	자산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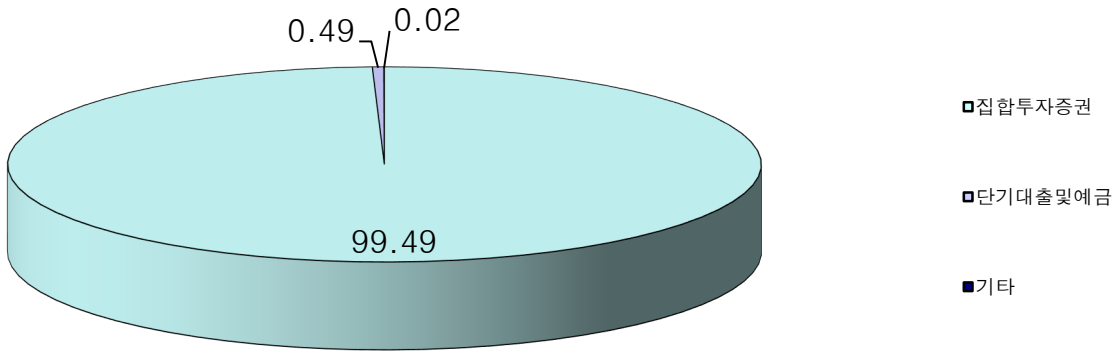
구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및 예금		
KRW	0	0	0	15	0	0	0	0	0	2	0.12	18
	(0.00)	(0.00)	(0.00)	(85.21)	(0.00)	(0.00)	(0.00)	(0.00)	(0.00)	(14.14)	(0.65)	(3.00)
EUR	0	0	0	73	0	0	0	0	0	0	0	73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4.00)
USD	0	0	0	426	0	0	0	0	0	0.03	0	426
	(0.00)	(0.00)	(0.00)	(99.99)	(0.00)	(0.00)	(0.00)	(0.00)	(0.00)	(0.01)	(0.00)	(82.00)
합계	0	0	0	514	0	0	0	0	0	3	0.12	516
	(0.00)	(0.00)	(0.00)	(99.49)	(0.00)	(0.00)	(0.00)	(0.00)	(0.00)	(0.49)	(0.02)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KCGI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5.10.22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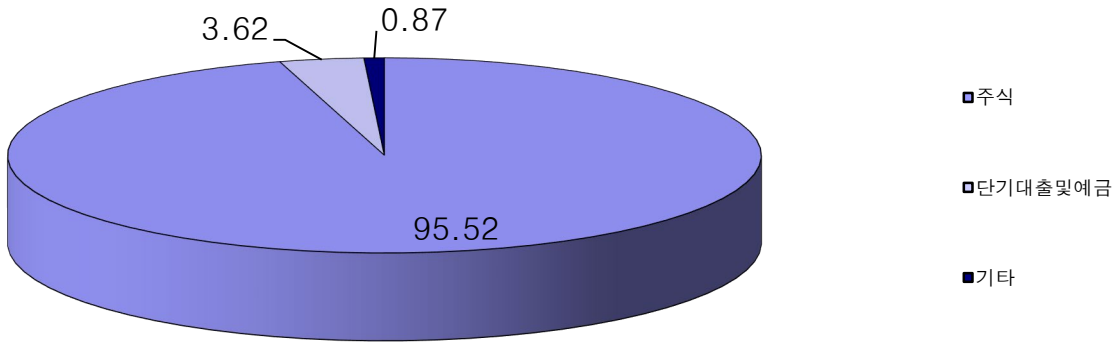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3,225	0	0	0	0	0	0	0	0	122	29	3,376
	(95.5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62)	(0.87)	(100.00)
합계	3,225	0	0	0	0	0	0	0	0	122	29	3,376
	(95.5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62)	(0.87)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KCGI글로벌diversified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25.10.22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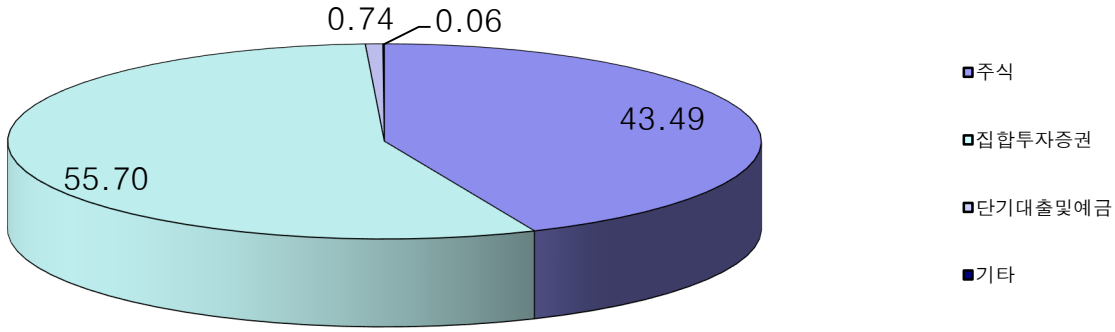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493	0	0	0	0	0	21	2	516
	(0.00)	(0.00)	(0.00)	(95.38)	(0.00)	(0.00)	(0.00)	(0.00)	(0.00)	(4.15)	(0.48)	(13.00)
USD	1,671	0	0	1,648	0	0	0	0	0	7	0	3,327
	(50.24)	(0.00)	(0.00)	(49.54)	(0.00)	(0.00)	(0.00)	(0.00)	(0.00)	(0.22)	(0.00)	(87.00)
합계	1,671	0	0	2,141	0	0	0	0	0	29	2	3,843
	(43.49)	(0.00)	(0.00)	(55.70)	(0.00)	(0.00)	(0.00)	(0.00)	(0.00)	(0.74)	(0.06)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KCGI글로벌성장기반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5.10.22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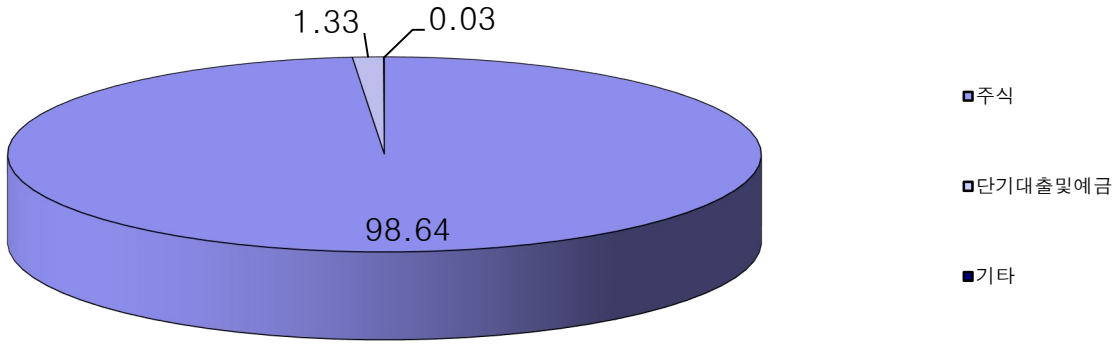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0	0	0	0	0	0	6	0.35	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4.38)	(5.62)	(1.00)
CNH	15	0	0	0	0	0	0	0	0	0	0	15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0)
HKD	52	0	0	0	0	0	0	0	0	0	0	52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00)
USD	920	0	0	0	0	0	0	0	0	7	0	927
	(99.2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80)	(0.00)	(93.00)
합계	987	0	0	0	0	0	0	0	0	13	0.35	1,000
	(98.6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33)	(0.03)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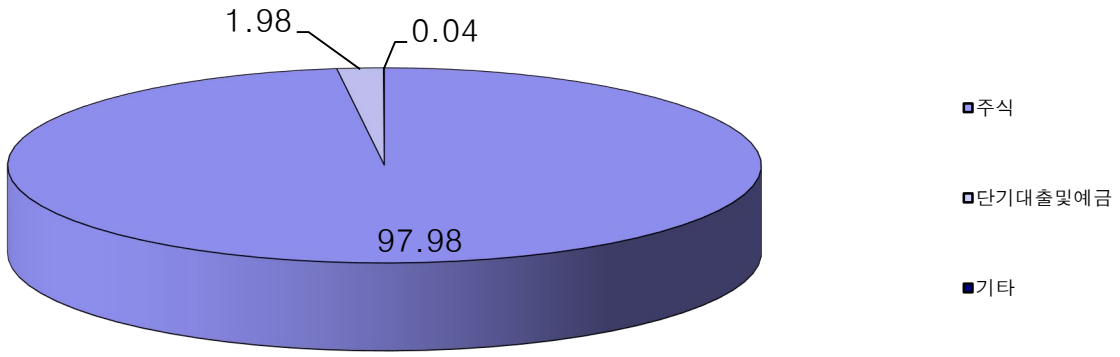


KCGI이머징마켓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5.10.22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35	0	0	0	0	0	0	0	0	1	0.24	137
	(98.9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88)	(0.18)	(21.00)
CNH	134	0	0	0	0	0	0	0	0	0	0	134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1.00)
HKD	157	0	0	0	0	0	0	0	0	0	0	157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4.00)
USD	204	0	0	0	0	0	0	0	0	12	0	215
	(94.6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37)	(0.00)	(33.00)
합계	631	0	0	0	0	0	0	0	0	13	0.24	644
	(97.9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98)	(0.04)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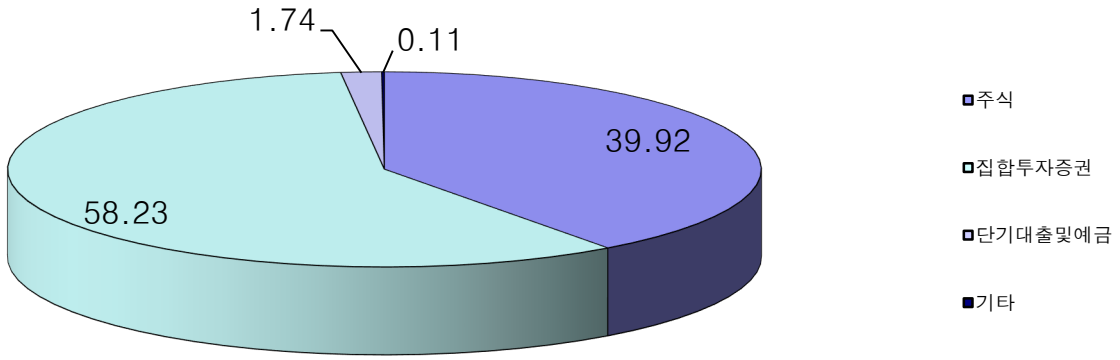


KCGI글로벌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25.10.22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0	0	0	0	0	0	2	1	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2.29)	(37.71)	(0.00)
USD	387	0	0	565	0	0	0	0	0	15	0	968
	(40.04)	(0.00)	(0.00)	(58.40)	(0.00)	(0.00)	(0.00)	(0.00)	(0.00)	(1.56)	(0.00)	(100.00)
합계	387	0	0	565	0	0	0	0	0	17	1	970
	(39.92)	(0.00)	(0.00)	(58.23)	(0.00)	(0.00)	(0.00)	(0.00)	(0.00)	(1.74)	(0.11)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KCGI아시아테크놀로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5.10.22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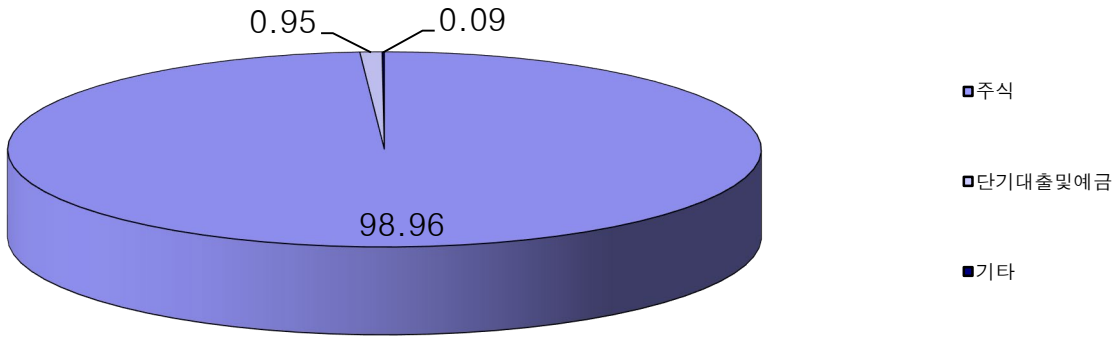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81	0	0	0	0	0	0	0	0	4	0.47	86
	(94.4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98)	(0.54)	(17.00)
CNH	62	0	0	0	0	0	0	0	0	0	0	62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3.00)
HKD	108	0	0	0	0	0	0	0	0	0	0	108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2.00)
JPY	142	0	0	0	0	0	0	0	0	0	0	142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9.00)
USD	94	0	0	0	0	0	0	0	0	0.37	0	95
	(99.6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9)	(0.00)	(19.00)
합계	487	0	0	0	0	0	0	0	0	5	0.47	492
	(98.9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95)	(0.09)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KCGI글로벌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2025.10.22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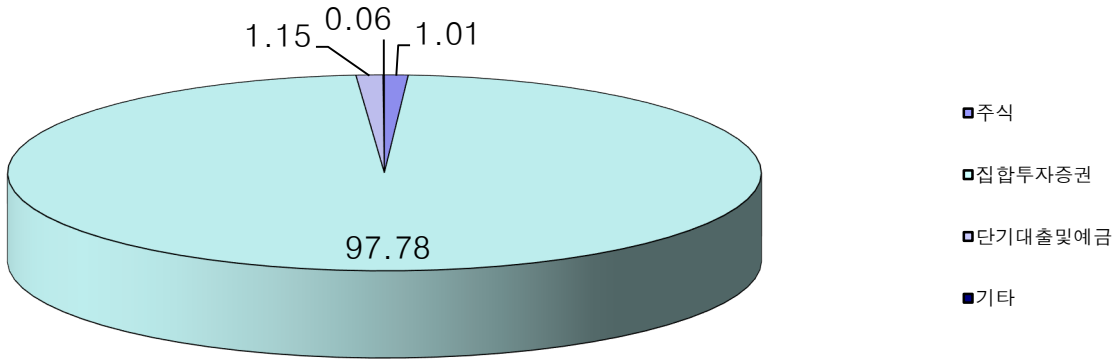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0	0	0	0	0	0	2	0.13	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4.85)	(5.15)	(1.00)
AUD	0	0	0	14	0	0	0	0	0	0	0	14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00)
JPY	0	0	0	11	0	0	0	0	0	0	0	11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00)
USD	2	0	0	197	0	0	0	0	0	0.17	0	199
	(1.16)	(0.00)	(0.00)	(98.76)	(0.00)	(0.00)	(0.00)	(0.00)	(0.00)	(0.09)	(0.00)	(88.00)
합계	2	0	0	222	0	0	0	0	0	3	0.13	227
	(1.01)	(0.00)	(0.00)	(97.78)	(0.00)	(0.00)	(0.00)	(0.00)	(0.00)	(1.15)	(0.06)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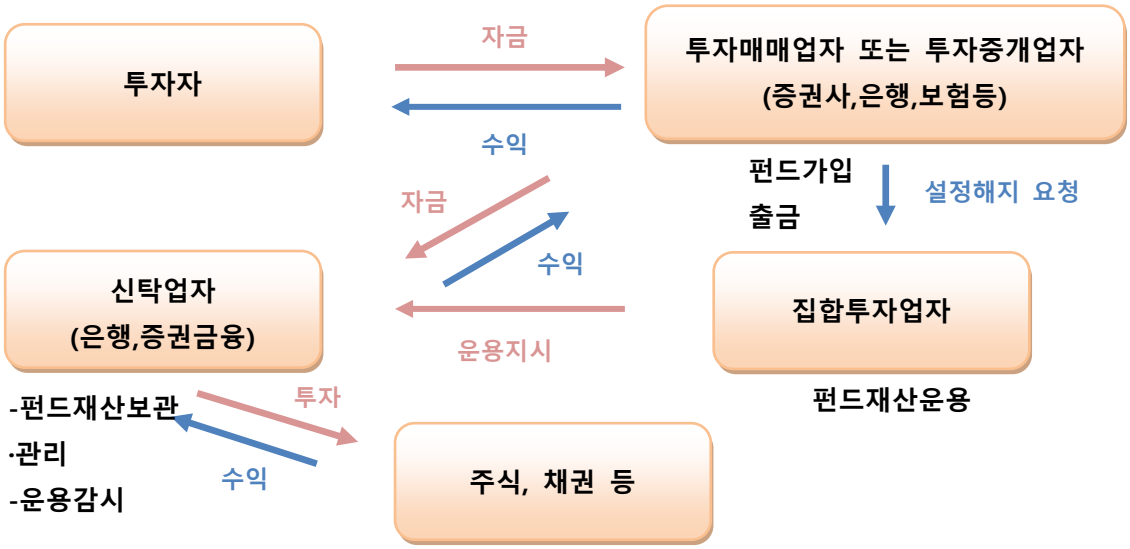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간의 관계



1. 집합투자업자의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One IFC 15층 TEL)02-6320-3000 http://www.kcgiam.com/
회사연혁	2008. 5 회사설립 2008. 7 자산운용업 본허가 2008. 7 메리츠종금 영업양수 2009.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인가 2010. 3 자본금 50억원 증자 2013.12 자본금 감소 무상감자(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2015.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2023. 8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로 상호변경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자본금	132.3억원
주요주주현황	㈜케이씨지아이 60%, HS화성㈜ 4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집합투자기구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

(2) 선관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요약 재무상태표>

구 분	제 17기말 2024.12.31	제 16기말 2023.12.31
자산총계	**69,721**	**68,471**
-현금및예치금	**39,169**	**54,123**
-유가증권	**24,042**	**7,395**
-이연법인세자산	**1,564**	**2,227**
-기타자산	**4,946**	**4,726**
• 미수수익	1,928	1,752
• 무형자산	1,079	85
• 기 타	1,939	2,889
부채총계	**35,906**	**36,340**
• 예수부채등	35,906	36,340
자본총계	**33,815**	**32,131**
- 자본금	13,230	13,230
- 자본조정	-74	-74
- 기타포괄손익	-381	-366
- 이익 잉여금	21,040	19,341
당기순이익	**2,010**	**925**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백만원)

구 분	제17기 2024.01.01~ 2024.12.31	제16기 2023.01.01~ 2023.12.31
영업수익	**17,384**	**14,638**
- 자산관리수수료	37	13
- 집합투자기구운용보수	10,750	9,541
-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	1,668	1,498
- 유가증권매매익	3,833	2,466
- 이자수익 등	1,096	1,120
영업비용	**14,579**	**13,638**
- 임직원급여	5,440	3,549
- 복리후생비	1,005	658
- 건물임차료	366	354
- 전산운용비	1,397	1,260
- 기타제비용	6,371	7,817
영업이익	**2,805**	**1,000**
영업외손익	**2**	**311**
세전이익	**2,807**	**1,311**
법인세비용	**17,384**	**14,638**
당기순이익	**2,010**	**925**
당기총포괄이익	**1,986**	**866**

* 상기 요약 재무제표는 K-IFRS기준으로 작성함

라. 운용자산규모

(2025.12.05 현재 /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부동산파생	특별자산및 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및 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12,180	2,937	5,473	0	6,761	99	0	96	2,376	602	0	30,526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신탁업자 : 해당사항없음

나. 기타 업무의 신탁업자 : 해당사항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 1가) ☏ 02-2002-3000 http://www.wooribank.com/
회사연혁	1981. 6 국내 최초 민영은행 2001 우리금융지주에 편입 및 평화은행 합병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2)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1) 의무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2)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02) 2168 – 0400 www.shinhanfundpartners.com
회사연혁	2000. 6 법인설립 2008. 5 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2) 주요 업무

①주요업무

-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②의무와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이지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88(운니동 9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여의도동)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ONE CENTINEL 15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3층 (여의도동, CCMM빌딩)

	T.02-399-3350	T.02-398-3900	T.02-3215-1400	T.02-785-141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egap.co.kr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수익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③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ㄱ)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ㄷ)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ㄹ)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⑤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자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②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③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④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⑤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⑥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2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써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상기의 (3) 내지 (4)의 사유로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이내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류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에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3)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④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에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 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④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
- 투자신탁의 명칭
- 투자대상자산(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함)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투자자산별 취득한도 및 취득한도 초과시 해소방법 및 해소기한

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 아래의 수시공시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집합투자업자,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집합투자업자(www.kcgiam.com) 및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 89조 및 시행령 제93조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른 변경,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그 밖에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①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td><td>투자중개업자 선정 시 각 자산에 대한 평가항목은 조사분석서비스와 매매체결서비스로 분류하며, 운용담당부서에서 항목별 배점기준을 두어 평가한다.
<table>
<tr><td>구 분</td><td>조사분석서비스</td><td>매매체결서비스</td></tr>
<tr><td>배점기준</td><td>70%</td><td>30%</td></tr>
</table></td></tr>
<tr><td>평가방법</td><td>① 당사의「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침」에 의한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에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선정한다. 이 경우 각 운용담당부서에서「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해당 임직원 중에서 평가위원을 정한다.
② 조사분석서비스평가위원회의 평가, 선정은 분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평가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③ 당사는 거래 투자중개업자를 적절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td></tr>
</table>

주1) 2014.1.2에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모펀드를 공유하는 다른 자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로 별도로 고유재산을 투자하지 않았으나, 다른 자펀드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기재하였습니다.

KCGI주니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모펀드: KCGI글로벌diversified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구분	투자목적	투자승인일자	투자집행시기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금 회수계획
필수 고유재산투자	고유자금 운용	2017.6.14	2017.6.15 (최초설정일)	2억원	2017.6.15부터 3년이상	의무기간이 경과하여 2023.9.13/2023.11.14 2회 분할 회수
추가 고유재산투자	고유자금 운용	2017.12.12	2017.12.14	1.5억원	2017.12.14부터 3년이상	

KCGI이머징마켓증권자투자신탁[주식] (모펀드 : KCGI이머징마켓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투자목적	투자승인일자	투자집행시기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금 회수계획
필수 고유재산투자	고유자금 운용	2020.10.5	2020.10.7 (최초설정일)	2억원	2020.10.7부터 3년이상	의무기간이 경과하여 2023.12.5 회수
추가 고유재산투자	고유자금 운용	2020.10.15	2020.10.15	6천만원	2020.10.15부터 3년이상	2023.12.5 회수

KCGI글로벌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모펀드 : KCGI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구분	투자목적	투자승인일자	투자집행시기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금 회수계획
필수 고유재산투자	고유자금 운용	2020.7.23	2020.7.23 (최초설정일)	2억원	2020.7.23부터 3년이상	의무기간이 경과하여 2024.1.19 회수

KCGI글로벌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모펀드 : KCGI글로벌고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구분	투자목적	투자승인일자	투자집행시기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금 회수계획
필수 고유재산투자	고유자금 운용	2020.10.5	2020.10.7 (최초설정일)	2억원	2020.10.7부터 3년이상	의무기간이 경과하여 2023.12.5 회수

KCGI글로벌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모펀드 : KCGI글로벌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구분	투자목적	투자승인일자	투자집행시기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금 회수계획
필수 고유재산투자	고유자금 운용	2020.1.31	2020.2.3 (최초설정일)	2억원	2020.2.3부터 3년이상	의무기간이 경과하여 2023.10.30 회수

KCGI아시아테크놀로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 (모펀드 : KCGI아시아테크놀로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투자목적	투자승인일자	투자집행시기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금 회수계획
필수 고유재산투자	고유자금 운용	2022.03.22	2022.3.23 (최초설정일)	2억원	2022.3.23부터 3년이상	별도 회수 계획 없음

KCGI글로벌성장기반증권자투자신탁[주식](모펀드: KCGI글로벌성장기반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주체	투자목적	투자승인일자	투자집행시기	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금 회수계획
필수 고유재산투자	고유자금 운용	2018.01.17	2018.01.17	2억원	2018.1.17~ 3년이상	의무기간이 경과하여 2023.12.20 회수

주1) 의무투자기간 : 최초 설정일 ~ 3년이상

주2) 의무투자기간 경과전에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요건 :

① 존속기간 3년 미만인 펀드는 규약상 존속기한까지 투자

② ⅰ)당연 해지사유 발생, ⅱ)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ⅲ)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하는 경우

③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

펀드로 편입

④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산운용사가 변경되는 경우펀드를 이전 받는 자산운용사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 : 이전 받는 자산운용사는 의무투자기간(종전 보유기간 합산)까지 자사 펀드 투자를 유지

주3) 자금 회수 절차 및 관련 공시방법

① 회수절차 진행시 일시 환매로 일반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로 합니다.

주4)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투자금 환매는 의무투자기간 경과전에도 위의 요건(주2))을 충족할 경우 및 의무투자기간 경과 후 환매할 경우 동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상 환매결과를 기재할 예정이며 당사 홈페이지(www.kcgiam.com)를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참고 - 펀드용어정리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배당소득	펀드운용시 증권(주식·채권 등)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또는 총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판매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판매 및 관리 등 집합투자증권 매입, 환매 및 투자기간 중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고객의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성과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이득	펀드운용시 증권(주식·채권 등)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을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